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2024. 11.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 방법 ..... 1
  - 제3절 기대효과 ..... 2
- 제2장 치안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3
  - 제1절 공동생산 이론 ..... 3
  - 제2절 치안 거버넌스 이론 ..... 4
  - 제3절 주민 참여이론 ..... 6
  - 제4절 지역사회 경찰 활동 ..... 8
  - 제5절 선행연구 ..... 9
-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11
  -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치안 현황 ..... 11
  - 제2절 자율방범대 법적 현황 ..... 15
  - 제3절 자율방범대 제도적 현황 ..... 34
  - 제4절 국·내외 치안 거버넌스 현황 ..... 45
-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효율성 및 조사분석 ..... 52
  - 제1절 효율성 분석 ..... 52
  - 제2절 설문조사 및 분석 ..... 69
  -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 95
  -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 ..... 107
  -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14
  - 제6절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한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 118
- 제5장 세종특별자치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28
  - 제1절 연구의 시사점 ..... 128
  - 제2절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 131
  - 제3절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36

【참고문헌】 ..... 139

부 록 ..... 142

표 목 차

<표 III-1> 2019-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지수 변화 ..... 12

<표 III-2> 2023년 시·도별 지역안전지수 ..... 12

<표 III-3> 2022년 전국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 13

<표 III-4> 시·도별 아동안전지킴이 현황(2020년) ..... 13

<표 III-5>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 14

<표 III-6> 2024년 8월 행정동별 평균연령 ..... 14

<표 III-7> 세종특별자치시 소년범죄 검거 인원 현황(2019년) ..... 15

<표 III-8> 자율방범대 읍·면·동별 현황 ..... 35

<표 III-9> 자율방범대 지대 초소 현황(19개) ..... 35

<표 III-10>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분기별 실적 ..... 37

<표 III-11>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 ..... 38

<표 III-12>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현황 (2017~24) ..... 39

<표 III-13>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보장 내용(2024년도) ..... 38

<표 III-14> 자율방범대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 40

<표 III-15>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 41

<표 III-16> 2024년도 자율방범대 사업지원 ..... 42

<표 III-17>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22.1.1. ~24.3.31.) ..... 43

<표 III-18> 2022년-2024년 자율방범대 교육 현황 ..... 44

<표 III-19> 녹색 어머니 연합회 구성 ..... 44

<표 IV-1> 자율방범대, 범죄검거 및 신고 1 (2020~2022년, 단위: 건) ..... 52

<표 IV-2> 자율방범대, 범죄검거 및 신고 2 (2020~2022년, 단위: 건) ..... 53

<표 IV-3> 지역별 전체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8~2022년, 단위: 건) ..... 54

<표 IV-4> 자율방범대 합동 검거 실적 현황 ..... 55

<표 IV-5> 2020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56

<표 IV-6> 2021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59

<표 IV-7> 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62

<표 IV-8> 2020~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3년간 평균) ..... 65

<표 IV-9> 평균 DMU 효율성 ..... 68

<표 IV-10> 응답자별 성별 구성 ..... 69

<표 IV-11> 응답자별 연령 구성 ..... 70

<표 IV-12> 응답자별 학력 구성 ..... 70

<표 IV-13> 응답자별 혼인상태 구성 .....	71
<표 IV-14> 응답자별 자녀 여부 .....	71
<표 IV-15> 응답자별 자녀 수 .....	72
<표 IV-16> 응답자별 자녀 성별 .....	73
<표 IV-17> 응답자별 월 소득 구성 .....	74
<표 IV-18> 응답자별 직업 구성 .....	74
<표 IV-19> 응답자별 주거유형 구성 .....	75
<표 IV-20> 응답자별 주거환경 .....	75
<표 IV-21> 응답자별 지난 일주일간 세종시 거주 빈도 .....	77
<표 IV-22> 응답자별 참여 단체 .....	77
<표 IV-23> 응답자별 현재 상태 .....	78
<표 IV-24> 지역 치안 활동 만족도 .....	79
<표 IV-25> 자율방범대 활동 세종시 안전(치안) 도움 정도 .....	80
<표 IV-26> 세종시 전반적 안전도 .....	80
<표 IV-27> 세종시 주간 교통안전도 .....	81
<표 IV-28> 세종시 야간 교통안전도 .....	80
<표 IV-29> 세종시 주간 치안 안전도 .....	82
<표 IV-30> 세종시 야간 치안 안전도 .....	82
<표 IV-31> 세종시 청소년 활동 안전도 .....	83
<표 IV-32> 세종시 애정도 .....	84
<표 IV-33> 평균별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자율방범대원 .....	85
<표 IV-34> 평균별 추후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하게 될 주된 이유: 세종시 공무원 .....	86
<표 IV-35>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	87
<표 IV-36>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 안전 봉사 .....	87
<표 IV-37>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 주민 봉사 .....	88
<표 IV-38>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 주민과 어울림 .....	88
<표 IV-39>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기존 방범대원과의 친분 .....	89
<표 IV-40>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공무원과의 관계 .....	89
<표 IV-41>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경찰의 방범 활동 도움 .....	90
<표 IV-42>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인센티브 .....	90
<표 IV-43>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에 관한 권유 주제 .....	91
<표 IV-44>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이웃 권유 의사 .....	92

<표 IV-45> 자율 방범 활동 업무 .....	93
<표 IV-46> 세종시 치안 및 범죄 문제 정도 .....	95
<표 IV-47> 자율 방범 활동 위험 정도 .....	96
<표 IV-48>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직구축, 인력확보 정도 .....	97
<표 IV-49>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시설구축, 장비구축 정도 .....	98
<표 IV-50>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근무 여건, 복지수준 정도 .....	98
<표 IV-51>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자율방범대, 세종경찰청 협업 정도 .....	99
<표 IV-52> 자율 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 .....	100
<표 IV-53> 세종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	102
<표 IV-54> 자율방범대 참여 장애요인 .....	103
<표 IV-55> 자율 방범 활동 참여 활성화 경찰청 지원 노력 .....	105
<표 IV-56> 자율 방범 활동 참여 활성화 시의회, 위원회, 자치단체 지원 노력 .....	106
<표 IV-57> 자율 방범 활동 참여 활성화 지역 주민 지원 노력 .....	107
<표 IV-5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 .....	108
<표 IV-5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필요 사항 .....	109
<표 IV-60>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 .....	110
<표 IV-61> 청장년층 자율 방범 활동 기피 이유 .....	111
<표 IV-62> 청장년층 자율 방범 활동 유인책 .....	111
<표 IV-63> 자율방범대 운영 중요 요인 .....	112
<표 IV-64> 자율방범대 활성화 중요 조건 .....	113
<표 IV-65> 자율 방범 활동 활성화 중요 지원 .....	113
<표 IV-66> 교육훈련 추가 내용 .....	116
<표 IV-67>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	117
<표 IV-68> 치안 거버넌스 구성 주요 사항 .....	118
<표 V-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조례개정(안) .....	131
<표 V-2> 일본 이치카와시 방범만들기 위원회 구성 .....	136

## 그림 목 차

<그림 III-1> 세종경찰청 조직도 .....	11
<그림 III-2> 전북자치경찰 순찰 앱 .....	45
<그림 III-3> 세이프티 부산 앱 .....	46
<그림 III-4> 일본 방법 CSR 활동 .....	51
<그림 IV-1> 2020년 광역시·도별 효율성(1) .....	57
<그림 IV-2> 2020년 광역시·도별 효율성(2) .....	57
<그림 IV-3> 2021년 DMU효율성(1) .....	60
<그림 IV-4> 2021년 DMU효율성(2) .....	60
<그림 IV-5> 2022년 DMU효율성(1) .....	63
<그림 IV-6> 2022년 DMU효율성(2) .....	63
<그림 IV-7> 평균 DMU효율성(1) .....	66
<그림 IV-8> 평균 DMU효율성(2) .....	66
<그림 IV-9> 응답자별 거주기간: 자율방법대원 .....	76
<그림 IV-10> 응답자별 거주기간: 세종시 공무원 .....	76
<그림 IV-11> 자율 방법 활동 참여 의사 .....	78
<그림 IV-12> 하루 적정 자율 방법 활동 시간: 자율방법대원 .....	83
<그림 IV-13> 세종시 거주 여부 & 안전(치안) 관심도 .....	84
<그림 IV-14> 참여 계기 및 추후 참여 권유 방식 .....	91
<그림 IV-15> 자율방법대 참여 빈도 및 추후 참여 빈도 의사 .....	92
<그림 IV-16> 자율 방법 활동 업무: 세종시 공무원 .....	94
<그림 IV-17> 자율 방법 활동 업무: 자율방법대원 .....	94
<그림 IV-18> 자율 방법 활동 참여 저해 요인: 자율방법대원 .....	100
<그림 IV-19> 자율 방법 활동 참여 저해 요인: 세종시 공무원 .....	101
<그림 IV-20>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자율방법대원 & 세종시 공무원 .....	103
<그림 IV-21>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자율방법대원 .....	104
<그림 IV-22>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세종시 공무원 .....	104
<그림 IV-23> 자율 방법 활동 교육 적절성: 자율방법대원 .....	114
<그림 IV-24>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 도움 정도: 자율방법대원 .....	114
<그림 IV-25> 자율 방법 활동 교육 필요성: 세종시 공무원 .....	115
<그림 IV-26>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 도움 예상 정도: 세종시 공무원 .....	115

<그림 IV-27> 치안 인식과 자율방법대 .....	119
<그림 IV-28>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 .....	119
<그림 IV-29> 자율방법대 참여 지원 .....	120
<그림 IV-30> 법률 개정 범위(1) .....	121
<그림 IV-31> 법률 개정 범위(2) .....	123
<그림 IV-32> 치안 거너번스 구축 수준 .....	124
<그림 IV-33> 치안 거너번스 구축 고려 사항 .....	125
<그림 V-1> 세종형 자치경찰제 치안 거너번스 .....	137
<그림 V-2> 세종형 치안 거너번스 모형 .....	137

## I.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치안에 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자율방범대의 지원과 활용에 대한 적극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이 요구됨.
- 지역주민의 참여는 자율방범대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임.
- 본 연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기초한 개선 방안 제시.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시. 세종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동기요인 및 치안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세종경찰서의 요구사항 분석. 치안 거버넌스의 우수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정부의 지원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방법

-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 이론적 논의, 설문지 구성, 현황분석을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이용하고자 함. 문헌 연구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 정부보고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회과학조사 방법 중 양적연구 방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설문 대상자들은 자율방범대원 및 공무원이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양적연구방법을 보완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여 심층 면담을 함으로써 세종형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 실증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 그 외에도 자율방범대 임원 및 관련전문가 초청을 통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보된 세종형 자율방범대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제3절 기대효과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함.
-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치안 거버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모형을 제시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들의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참여 유인 동기 및 지원제도를 설계함.

## II. 치안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제1절 공동생산 이론

- 치안의 문제는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치안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을 보다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여야 함.
- 치안 서비스라는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주민, 지방정부, 경찰 등의 협력을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이 특정한 문제를 각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동생산(co-product)이라고 함.
-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주민, 경찰, 지방정부는 공동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송건섭·김상길, 2013). 공동생산 이론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공영역의 행위자에게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참여를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이승종·김혜정, 2018).
- 과거에 치안 서비스에서 주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동적이고 수혜적인 입장에 있었고, 경찰이 치안 서비스의 적극적이고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식했음.
-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범죄에 대한 유형 및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경찰만의 역할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증대됨.
- 또한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치안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경찰과 주민이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주민의 관계가 상호 협조적 관계로 향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감.

• 공동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치경찰제도에서 주민은 치안 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치안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지역주민은 자치경찰제도에서 경찰 등과 같은 치안의 주된 행위자가 가지지 못했거나 부족한 정보와 인적 자원을 제공하여 지역에 안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생산된 치안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행위 주체들과 신뢰와 유대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어느 수준까지 또는 어느 범위까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공동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로 나타남.

• 시민들의 치안 활동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웃 공동 감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손능수, 2007).

•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위해 주민의 적극성과 소극성, 개인적 참여와 단체적 참여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화가 가능해짐. 또한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주민 이외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 민간경비의 포함 여부, 경찰 업무에 대리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제2절 치안 거버넌스 이론

• 치안 행정 및 치안 서비스에 있어서 치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함. 치안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거버넌스(governance)'의 논의는 정부 역할의 변화 및 운영체제의 변화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함(김영식, 2016). 과거 행정서비스의 주체는 정부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통치

(government) 주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

- 통치(government)의 개념에서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서 수동적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민사회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 거버넌스 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 즉, 정부, 기업, 시민 등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체들의 조정과 같은 역할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및 방법에 관심이 많음.

-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는 자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주체들의 상호 간 지속적인 관계와 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함(한승준, 2007).

- 치안 거버넌스는 치안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국가 경찰체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 치안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의 치안 거버넌스는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행정기관, 기업 및 시민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허용훈·문유석, 2007).

- 지역 단위에서 치안 거버넌스는 범위의 다양성과 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역의 치안 문제를 경찰만으로는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여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함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길종백(2014)은 일본의 방법마을 만들기 사례를 연구하여 치안 거버넌스 주체들의 협력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와 협력 확보, 지방정부의 치안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역할 제고 등을 함의점으로 제시하고 있음.

- 김한규·허용훈(2023)은 치안 거버넌스가 어느 주체의 일방적 노력에 의해 구축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공동목표 설정과 치안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제3절 주민 참여 이론

- 사전적 의미의 참여는 ‘대중이 정치, 경제, 경영 또는 기타 사회적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김치수·주희진·윤태섭, 2023).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해 주민 참여의 요구와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적 장치들이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음. 주민 참여는 주민이 행정 및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주민 참여의 방식과 수준은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도 연관되어 있음(김미연·김인설, 2018). 주민 참여의 유형에 따라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능동적 참여, 수동적 참여,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직접적 참여, 간접적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음.

- 시민참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인 Arnstein은 시민참여 사다리이론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론화하고 있음.

- Arnstein(1969)은 주민 참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미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나눌 수 있고, 각 참여의 방법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이정호·서덕수·김종빈, 2022).

- 첫째, 미참여의 단계에서는 조작과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정부를 포함한 공공

기관들이 명분을 위해 주민의 참여를 조작하는 수준을 의미함.

- 둘째, 형식적 참여 단계에서는 정보전달, 의견조사, 달래기 등을 방법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집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셋째, 실질적 참여 단계에서는 공동협력, 권한 위임, 주민 주도적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실질적 참여 과정에서는 정책 과정에서 주민과의 실질적인 권력이나 권한이 분배되고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공유하게 되는 과정임.

- 또한 주민들이 단순 참여자의 역할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때로는 공동체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 Nabatchi(2012)는 참여의 유형과 더불어 의사결정 권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향과 방법을 토대로 8가지의 참여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의사소통 모드에 있어서 일방향과 쌍방향 및 숙의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고, 참여자 선정이나 모집과 같은 참여 방법과 의사 결정권 또는 정보전달의 효율성 및 시행 절차의 반복성 등에 대해 주민 참여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계에서 관료적이며 수직적 협력과 특정 이슈 중심적인 수평적 협력을 구분하고 적극적 주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향이나 양방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사안에 대해 숙의적 단계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함.

- 주민 참여에 관한 제도의 유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주민 감사청구,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안에 관해 특정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치안과 관련한 시민참여에서 시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 치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자율방범대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해야 함(Sampson et al., 1997).

#### 제4절 지역사회 경찰 활동

- 지역사회의 모든 경찰 활동, 즉 경찰 운영을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을 최대의 가치로 인식하고 운영해 간다는 것임. 따라서 경찰 역할의 변화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됨.

- 경찰 역할은 주로 상급 기관이나 상부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르거나 법을 피동적으로 집행하는 집행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을 위한 조연자(advisor), 조정자(coordinator), 촉진자(facilitator) 그리고 문제해결사(trouble shooter)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게 거론됨.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주민과 경찰이 공동 주체가 된다는 것임.

- 이를 통해 지역 문제의 해결이 주민자치로 이뤄질 수 있음. 이는 경찰의 실적 평가에서도 단지 범인 검거 수, 검거율 등의 이른바 건수 위주 혹은 양적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된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질적 기준이 중시된다는 의미임.<sup>1)</sup>

-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시민과 경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청하며 시민은 치안 서비스의 피동적인 수혜자 입장에서부터 치안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 전환되어, 경찰과 함께 모든 치안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

-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범죄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역사회에 확장시켜서 범죄를 유발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고 경찰의 권한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분산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일선 경찰들이 잠재적인 범죄와 관련된 지역 사회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해야 함(김경태, 2004: 167).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생산의 한 유형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

1) 미래한국, 2024.1.16. 자율방범대는 주민이 생산하는 '치안공공재'

와 협조를 강조하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 치안 활동이라 할 수 있음(허용훈, 2003 : 61).

## 제5절 선행연구

• 김인(1997). '경찰 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부산지역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율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동네보다 안전하다고 인식,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낼수록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영실(2005).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실태 및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활동을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자율방범대원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활성화 방안(경제적 지원, 대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 등), 경찰 지원 강화(교육 및 훈련 강화), 사회적 방안(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함.

• 전대양·한상철(2012). '자율방범대원들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범죄예방활동 만족도와 의 관계 분석'의 연구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 강화, 자율방범대 동료 간의 관계 만족이 범죄예방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강필영(2020). '자율방범대원 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종로구 거주 259명의 자율방범대원을 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애착, 참여경험, 주민유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박여주(2022).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의 효용성 및 지역 치안 개선방안'의 연구에서 셰이프부산 앱을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치안 정보의 제공, 자율방범대의 활동 확인, 양방향 소통 확인이 가능했으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확인한 지역주민들은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영향 요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지만 연구의 제약점을 가지고 있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년 4.27일 시행)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형편임.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한다면, 범죄예방 및 지역애착, 주민유대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방범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Ⅲ.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 치안 현황

##### 1. 일반현황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465km(14만 662평)이다. 세종경찰청 은 4과 16계/경찰서 2, 지구대 4, 파출소 5(경찰백서, 2023: 377).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389,370명임(2024년 8월 기준).

〈그림 Ⅲ-1〉 세종경찰청 조직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의 지역안전지수 변화 추이에서 생활안전이 가장 취약하였으며, 교통, 화재 분야 순으로 안전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와 자살 분야는 상대적으로 안전지수가 높게 나타남.

〈표 Ⅲ-1〉 2019-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지수 변화

연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19	5	5	1	5	2	2
2020	5	1	1	5	1	2
2021	3	4	1	5	1	1
2022	3	1	1	4	1	1
2023	5	3	1	5	2	1

자료: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2024.8.23.최종검색\)](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2024.8.23.최종검색))

※ 1-5등급 부여 1등급일수록 안전

교통사고: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화재: 인구 1만명당 화재사망자 수

범죄: 인구 1만명당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발생건 수

생활안전: 인구 1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 수

자살: 인구 1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

감염병: 인구 1만명당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

•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5등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등급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및 생활안전 분야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 Ⅲ-2〉 2023년 시·도별 지역안전지수

지역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서울	1	3	4	1	1	2
부산	4	5	4	2	5	4
대구	3	4	3	3	4	5
인천	3	2	2	4	3	4
광주	4	1	3	3	3	3
대전	4	4	4	2	5	3
울산	2	2	2	4	4	2
세종	5	3	1	5	2	1

※ 1-5등급 부여 1등급일수록 안전

자료: [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2024.8.23.최종검색\)](https://www.safemap.go.kr/asds/safe.do#tab2(2024.8.23.최종검색))

- 2024년 전국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435명으로 전국 평균 391명을 상회하고 있어 안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절한 경찰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Ⅲ-3〉 2022년 전국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지역	1인 당 담당주민 수
전국	398
서울	306
부산	350
인천	442
대구	399
대전	429
광주	104
울산	400
세종	484

자료: KOSIS e-지방지표(2024.8.12.검색)

-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는 82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아동안전에 기여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체 면적이 464.92km<sup>2</sup>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면적이 작은 편이지만, 면적 대비 아동안전지킴이는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대전의 면적은 540km<sup>2</sup>이지만, 아동안전지킴이는 세종보다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4〉 시·도별 아동안전지킴이 현황(202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050	531	399	434	268	258	204	82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585	611	611	450	713	730	747	819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 어린이 교통사고를 인구비에 대비하면 세종 36만명, 부산 332만(9.2배), 서울 947만(26.3배)으로 부산은 450.8건(443건: -7건), 서울 1,288.7(1028건: -260건)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상대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지역	1인당 담당 주민 수
전국	8,753
서울	1,127
부산	445
인천	360
대구	510
대전	309
광주	350
울산	171
세종	89

자료: KOSIS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2024년 8월 20일 검색).

-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Ⅲ-6> 2024년 행정동별 평균연령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45.2세)과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39세, -6.2세)가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은 젊은것으로 나타남.

〈표 Ⅲ-6〉 2024년 8월 행정동별 평균연령

지역	전체 평균	남	여
전국	45.2	44	46.3
서울	44.8	44	45.5
부산	47	45.7	48.3
인천	44.2	43.2	45.2
대구	45.7	44.3	47.1
대전	43.8	42.7	44.9
광주	43.5	42.3	44.7
울산	44.1	43.2	45.2
세종	39	38.5	39.5

자료: <https://jumin.mois.go.kr/etcStatAvgAge.do>(2024.8.23.최종).

## 2. 범죄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 5대 범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강력범죄 발생건 수는 살인(2건), 강도(2건), 강간(26건), 강제추행(73건), 방화(8건), 절도(1,110건), 폭력(912건)이고 검거율은 67.8%의 검거율을 보여줌.
-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년범죄 검거 인원 현황(2019년)
- 소년범죄 검거에 있어서 절도 111명, 폭력 98명, 지능범죄 45명 등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절도, 폭력 및 지능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절도와 폭력 등의 소년범죄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찰력의 동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표 Ⅲ-7〉 세종특별자치시 소년범죄 검거 인원 현황(2019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지능범죄	풍속	기타	특별법범
1	0	6	0	111	98	45	0	7	54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 제2절 자율방범대 법적 현황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sup>2)</sup>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8호, 2022. 4. 26., 제정].

-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중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 3.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8조(복장·장비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자율방범활동 중 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원은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율방범대 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복장, 경광등 및 차량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감독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중앙회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칭 또는 그 대표자의 명칭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자율방범대 또는 중앙회등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848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

##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3)</sup>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27호, 2023. 4. 25., 제정].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연합회·연합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연합회·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제33427호, 2023. 4. 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p>4)</sup>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의 조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4) [시행 2023. 4. 27.] [행정안전부령 제401호, 2023. 5. 4., 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OOO 자율방범대”로 한다.

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① 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될 당시 소속 자율방범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은 둘 이상의 자율방범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무(이하 “총무”라 한다)는 자율방범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자율방범대장은 소속 자율방범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율방범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자율방범대장을 보좌하고, 자율방범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총무는 자율방범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⑤ 자율방범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 또는 총무를 지명한 자율방범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율방범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부대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정관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한 사람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가 변경되거나 자율방범대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방범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방범대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율방범대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증

④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조직·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자율방범대원의 위촉) ①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명단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추천서를 갈음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추천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①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해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해촉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방범대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율방범대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촉통지서를 발급해

야 한다.

제10조(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자율방범대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 중 알게 된 범죄 수사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계획, 진행상황, 사건·사고 관계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율방범대원 간 분쟁 등으로 자율방범활동을 방해한 경우
4. 자율방범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이와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 연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은 별표와 같다.

② 복장의 착용 기간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3조(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원은 해촉되거나 탈퇴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파출소장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④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

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 또는 자율방범대원이었던 사람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율방범대원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5조(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① 자율방범대원은 순찰신호봉, 손전등, 경적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 활동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제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 법령
3. 자율방범활동
4.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 인권의 개념·법령·제도·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 및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도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율방범대원: 기본교육 12시간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 ③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로, 같은 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는 시·군·구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회는 연합회의 회원으로, 연합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연합대의 대원으로, 연합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회에 회장·부회장·감사 및 사무총장을 두며,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합회에 회장·부회장·감사 및 사무처장을 두며,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연합대에 연합대장·부대장·감사 및 사무국장을 두며, 연합대장·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연합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중앙회·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중앙회등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총장·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을 임명한 회장 및 연합대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회장 및 연합대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사무총장·사무처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은 중앙회등을 각각 대표하고, 중앙회등의 사무를 각각 총괄한다.

⑦ 중앙회·연합회의 부회장 및 연합대 부대장은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을 각각 보좌하고,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⑨ 사무총장, 사무처장, 사무국장은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제20조(중앙회등의 총회) ① 중앙회등에 총회를 각각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또는 연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중앙회등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앙회등의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

5. 중앙회등의 해산

6.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④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구성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중앙회등의 설립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정관 1부

2.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운영현황

3. 별지 제21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임원명단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등의 설립신고를 한 자는 중앙회등의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거나 중앙회등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변경(해산)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회등의 변경신고의 경우

가. 대표자, 명칭 또는 사무실 위치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사무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앙회등 해산신고의 경우

가. 해산에 관한 총회 의결서

나.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증

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신고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방범중앙회(연합회, 연합대) 설립·변경(해산)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2조(중앙회등의 기능) 중앙회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2. 구성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
3.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4. 실종자 수색, 범죄현장 보존, 재난현장의 구조 지원 등 대규모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자율방범대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6. 자율방범대 기념행사 등 지원
7.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제23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회등을 지도·감독한다.

1.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복장·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등의 설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등이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등은 중앙회등의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연합회의 회장 및 연합대장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한다.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401호, 2023. 5. 4.>

이 규칙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자율방범대 자치법규(조례)<sup>5)</sup>

### 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sup>6)</su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법규는 조례 241건, 규칙 4건(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훈령 2건(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안전 봉사활동 지원관리 규정, 평택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4.11.4)

6) [시행 2023.12.18.] (전부개정) 2023.12.18 조례 제2322호.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단
  3. 그 밖에 시장이 방법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방법대 및 연합회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방법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정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및 연합회는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법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원과 방법대를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기타 자율방법대 관련 법령사항은 「(경찰청) 자율방법대 복제·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시행 2024. 4. 12.] [경찰청고시 제2024-4호, 2024. 4. 12., 제정.] 등이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법대 관련 조례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5조(정산), 제6조(지원중단), 제7조(지도 및 감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포상), 제10조(준용), 제11조(시행규칙)로 구성되어 있음.

## 제3절 자율방법대 제도적 현황

### 1. 조직

· 자율방법대는<sup>7)</sup> 2023년 말 전국적으로 4,194개 조직인 운영되고 있으며, 인원은

99,394명이 활동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는 1 연합회, 26 지대(남성대 8, 여성대 9, 남녀혼성대이며 542명 (남 277명, 여 26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Ⅲ-8〉 자율방범대 읍·면·동별 현황

(단위: 명)

계	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542	96	42	48	36	27	52	22
	한솔동	도담동	아름고운동	종촌동	보람동	다정동	어진동
	19	36	44	28	41	23	28

· 주요활동은 야간순찰 및 방범활동을 수행함. 각 지대별로 별도 활동계획 수립·추진하고 있음.<sup>8)</sup>(시 주관 안전분야 캠페인 및 행사 지원 등)

〈표 Ⅲ-9〉 자율방범대 지대 초소 현황(19개)

형 태	개소 수	지대 현황 (설치년도)	비 고
사유시설 무상이용 (컨테이너)	3개소	신안(조형아파트 소유 '08년), 장군1(장군농협 '90년), 연서(사유지 '13년).	
공공시설 무상사용 (경찰청 등)	6개소	죽림1('97년), 전의('05년), 보암('11년), 부강('03년), 연동('09년), 역전1('13년)	
공공시설 유상사용 (조치원청사)	1개소	연합회('24년)	
복검 내 일부	4개소	도담('16년), 종촌('16년), 다정('24년), 어진('24년)	
시, 근린공원시설 일부	5개소	역전2(남리공원 '12년), 금남('09년), 아름고운(고운뜰 공원 16년), 보람(반곡동 수변공원, '18년), 한솔('13년)	

7) 자율방범 활동은 1953년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 내가 사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주민 야경제(夜警制)에서 시작됐다. 의용소방대와 함께 대표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1963년 방범원 제도가 도입됐고, 1989년 이들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이후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로 재편됐다(미래한국, 2024.1.16.)(임창호, 2001: 21-22).

8) 지대별 순찰코스 결정 및 순찰조 편성하여 주 4회~5회(1회 8명 이내) 탄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읍면동	지대	초 소 현 황			초소 면적	건물구조	설치 년도
		주 소	대지 소유자	임대 형태			
계	19 지대						
조치원읍	연합회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후동 3층)	세종시	임대	134㎡	철근콘크리트	2013
	역전제1	장안2길 68	경찰청		20㎡	조립식 판넬	2013
	역전제2	남리 362	세종시		17㎡	조립식 판넬	2012
	죽림1	충현로 83	경찰청		40㎡	철근콘크리트	1997
	신안	신안리 산55-11	조형아파트 트소유		50㎡	조립식 판넬	2008
연동면	연동	청연로 606-1	경찰청		33㎡	조립식 판넬	2009
부강면	부강	부강리 410-2	경찰청		80㎡	조립식 판넬	2003
금남면	금남	금남구죽로 3-3	세종시		35㎡	조립식 판넬	2009
장군면	장군1	도계리 84-5	농협		24㎡	조립식 판넬	2009
연서면	연서	대첩로 175	정인우	사유지 무상임대	17㎡	조립식 판넬	2013
	봉암	당산로 347	경찰청		33㎡	조립식 판넬	2011
전의면	전의	만세길 6	경찰청		51㎡	철근콘크리트	2005
한솔동	한솔	한솔동 산 9	세종시		30㎡	조립식 판넬	2013
도담동	도담	보람로 77	세종시		약 50㎡	복컴 내 알파룸	2016
아름고운	아름고운	만남로 151	세종시		108㎡	공원사무실 일부	2016
종촌동	종촌	도음로 125	세종시		약 21㎡	복컴 내 일부	2016
보람동	보람	시청대로 365	LH		약 40㎡	공원사무실 일부	2018
다정동	다정	다정남3로 10	세종시		22.96㎡	복컴 내 일부	2024
어진동	어진	갈매로 480	세종시			복컴 내 일부	2024

## 2. 활동 및 장비

〈표 Ⅲ-11〉 자율방법대 활동내용·분기별 실적

(단위: 명, 건수)

연도	분기별	순찰횟 수	참여인원	활동 내용		
				방법 및 치안활동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 활동
2021	합계	6,557	20,219	5,937	304	316
	1분기	1,281	3,515	1,129	96	56
	2분기	1,864	5,649	1,697	79	88
	3분기	1,912	5,734	1,726	69	117
	4분기	1,500	5,321	1,385	60	55
2022	합계	5,995	23,636	5,233	447	315
	1분기	1,591	5,307	1,314	159	118
	2분기	1,661	5,918	1,440	130	91
	3분기	1,339	6,001	1,203	93	43
	4분기	1,404	6,410	1,276	65	63
2023	합계	5,445	30,679	1	202	234
	1분기	1,399	7,423	0	51	70
	2분기	1,396	7,619	0	49	49
	3분기	1,307	7,650	1	42	52
	4분기	1,343	7,987	0	60	63
2024	1분기	1,347	8,346	0	59	62

\* 신안지대는 순찰 차량 미배치.

\* 기존 부강지대차량 스타렉스 청원군으로 이송

<표 III-11> 자율방범대 차량 현황

읍면동	지 대	차종	차량번호	취득 년도	소 유 자	비고
계	17대					
조치원읍	역전제1	승용(아반떼)	30노7041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역전제2	승용(아반떼)	30노7042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죽림1	승용(아반떼)	30노7043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연동면	연동	승용(아반떼)	30노7047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부강면	부강	승합(스타리아)	714소7380	2024	부강면 자율방범대	2024.3.29.등록
금남면	금남	승용(아반떼)	30노7095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장군면	장군1	승합(스타렉스)	70어6866	2012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연서면	연서	승용(아반떼)	30노7045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봉암	승합(스타렉스)	70어6937	2015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기존 장군
전의면	전의	승용(아반떼)	30노7092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한솔동	한솔	승합(스타렉스)	70어6855	2013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도담동	도담	승용(아반떼)	30노7046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기존 전동
종촌동	종촌	승용(아반떼)	30노7093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기존 봉암
아름동	아름	승용(아반떼)	30노7091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전소정면 자율방범 지대 차량
보람동	보람	승용(아반떼)	30노7044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전산한 자율방범 지대 차량
자율방범대연합회		승합(스타렉스)	70어6959	2012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승용(아반떼)	30노7094	2008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귀연기지대차량

<표 III-12>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현황 (2017-2024)

연도별	보험금액(원)	가입인원	보장건수/금액	주요 원인	기타
계	89,550,630	3,973명 (남 2,356, 여 1,617)	204건 (48,193천원)		
2024	14,007,570	525명 (남 279, 여 246)		일반상해로 인한 수술비 및 위로금	KB손해보험
2023	11,935,890	503명 (남 269, 여 234)	71건 (6,806천원)	일반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수술비	KB손해보험
2022	12,803,940	478명 (남 283, 여 195)	76건 (15,278천원)	일반상해로 인한 치료비	KB손해보험
2021	13,974,420	491명 (남 290, 여 201)	43건 (7,801천원)	일반상해로 인한 치료비	KB손해보험
2020	12,860,180	499명 (남 305, 여 194)	15건 (5,475천원)	일반상해로 인한 치료비	KB손해보험
2019	6,930,920	440명 (남 268, 여 172)	27건 (9,788천원)	골절·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비	KB손해보험
2018	7,373,110	460명 (남 289, 여 171)	22건 (2,220천원)	"	KB손해보험
2017	9,664,600	577명 (남 373, 여 204)	21건 (7,631천원)	"	롯데손해보험

<표 III-13>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보장 내용 (2024년도)

구 분	지급사유	24년 보장금액	비고
사 망	상해사망	30,000천원	
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30,000천원	
위로금	화생발생위로금	300천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진단위로금	300천원	
	자원봉사활동중 골절발생위로금	300천원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수술위로금	200천원	
	강력범죄피해위로금(I) (상해와 폭행)	500천원	
수술비용	질병으로 수술시	200천원	
상해수술비용	상해수술비용	300천원	
입원일당	자원봉사활동중 상해 입원일당	20천원	
배상책임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10,000천원	

### 3. 예산

〈표 Ⅲ-14〉 자율방범대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합계	213,900	167,000	167,000	157,000	142,000	141,500	134,600	151,000	132,300
사무관리									
소계	4,000								
법정직무교육	4,000								
실비									
소계	135,000	152,000	152,000	147,000	132,000	131,500	117,600	121,000	102,800
방범대원 상해보험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7,000	13,000	13,000	13,200
야간순찰 급식비	80,000	80,000	80,000	75,000	75,000	77,000	58,000	57,000	48,000
방범대원 피복비	14,400	18,000	18,000	18,000	18,000	19,000	21,600	15,000	15,000
순찰차량유지비	21,600	24,000	24,000	24,000	24,000	23,500	25,000	28,000	21,600
비품구입	4,000	5,000	5,000	5,000	5,000	5,000		8,000	5,000
초소 수리비		10,000	10,000	10,000					
소계	52,000							10,000	5,500
초소 리모델링								10,000	5,500
차량구입 지원								69,000 △69,000 0	
초소신축								96,000 △96,000 0	
순찰차량구입	45,000								
연합회집기류	7,000								
경상보조									
소계	22,900	15,000	15,000	10,000	10,000	10,000	17,000	20,000	24,000
순찰차 차량보험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7,000	20,000	18,000
연합회운영(정액)									6,000
체육(등산)대회									
한마음대회	2,4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직무역량강화 교육	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연합회운영비	13,000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 가능.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조례(세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요 경비 수준에 한해 지원 가능.

〈표 Ⅲ-15〉 연도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천원)

통 계 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소 계	213,900	134,892	167,000	149,506	167,000	151,974	157,000	151,613
사무관리비	4,000	2,000	-	-	-	-	-	-
실비지원	135,000	60,392	152,000	138,342	152,000	140,440	147,000	144,410
민간경상 사업보조	9,900	7,500	15,000	11,164	15,000	11,534	10,000	7,203
민간단체법 정운영비보 조	13,000	13,000	-	-	-	-	-	-
민간자본사 업보조	52,000	52,000	-	-	-	-	-	-

※ 자율방범대(사무관리비) 법정직무교육(예산액 4,000천원)-경찰청 재배정  
 자율방범대(일반보전금) 실비예산 지원(예산액 135,000천원)  
 - 급식비(80,000천원), 차량유지비(21,600천원)  
 : 전년도 분기 활동실적에 따라 읍면동 재배정  
 - 야간순찰 급식비(월 12만원~27만원), 순찰차량유지비(월 5만원~13만원)  
 - 방범대원 피복비(14,400천원)  
 : 신규대원 중심으로 연합회 신청·지원(자경위 직접집행)  
 - 장비(비품)(4,000천원): 경광봉·손전등 등 야간순찰에 필요 물품지원(자경위 직접집행)  
 - 상해보험료(15,000천원): 연합회와 협의하여 지원(자경위 직접집행)  
 자율방범대(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원(예산액9,900천원)  
 - 순찰차 차량보험(7,500천원)-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직접 배정  
 -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2,400천원)-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직접 배정  
 자율방범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예산액13,000천원)  
 - 연합회사무실 대부료 및 운영-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직접 배정  
 자율방범대(민간자본이전) 지원(예산액52,000천원)  
 - 순찰차량 구입(45,000원)-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직접 배정  
 - 연합회 집기류 구입(7,000천원)-세종시자율방범연합회에 예산 직접 배정

<표 III-16> 2024년도 자율방범대 사업지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 기준	비 고
계	213,900		
법정직무교육	4,000	◦강사료, 장소대관, 홍보안내지 등	재배정 (자 → 경찰청)
방범대원 상해보험	15,000	◦대상(487명) / 24.4 ~ 25.3 ※ 희생자에 한함	직접 집행 (사전 수요조사)
방범대원 피복비	14,400	◦방범대원 근무복(동복, 하복, 야상 등) ·100,000원×180벌=18,000천원	
비품구입	4,000	◦방범조끼, 신호봉, 랜턴 등 필요 물품	
야간순찰 급식비	80,000	◦분기별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활동실적 없을 시 반납 및 지원 제외	재배정 (분기별 지원)
순찰차량 유지비	21,600	◦전용차량 17대 / 운행기록 반영 지원 ※ 매분기 차량계기판 참고 ◦개인차량 이용 지대 / 지대당 월 최대 12만 원 이내 ※ 월 이용횟수 및 1일 업무 시 운행거리 등 반영	
순찰차량 보험	7,500	◦17대(차량별)	민간경상 사업보조
한마음대회	2,400	◦장소사용료, 행사물품, 간식 등	(자 → 연합회)
연합회 운영비	13,000	◦연합회 초소 이전 및 설치·운영비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자 → 연합회)
순찰차량 구입	45,000	◦순찰차량 1대 구입(부강지대)	민간자본 사업보조
연합회 집기류 구매	7,000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자 → 연합회)

<표 III-17>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2022.1.1. ~ 2024.3.31.)

(단위: 천원)

단체명	연도	사업명	지원목적	지원액	정산액
자율방범 연합회	2021년	2021년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	방범차량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 기여	10,000	7,203
	2022년	2022년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	방범차량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 기여	10,000	6,534
		2022년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자율방범대간의 화합 및 사기증진	3,000	3,000
		2022년 자율방범대 직무역량 강화교육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2,000	2,000
	2023년	2023년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	방범차량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 기여	10,000	6,164
		2023년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자율방범대간의 화합 및 사기증진	3,000	3,000
		2023년 자율방범대 직무역량 강화교육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2,000	2,000
	2024년	2024년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보험	방범차량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수습과 예방 기여	7,500	사업완료후 정산예정
		2024년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자율방범대간의 화합 및 사기증진	2,400	사업완료후 정산예정
		연합회 운영비	자율방범대 안정적인 운영 및 회의, 교육장 활용	13,000	사업완료후 정산예정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역 내 범죄예방 및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45,000	42,207
		연합회 집기류 구매	쾌적한 연합회 사무실 공간 구성 지원	7,000	7,000

4. 교육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직무역량 강화교육 취소,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자율방범대 직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표 III-18> 2022-2024년 자율방범대 교육 현황

교육명	일시	장소	대상수	교육내용
직무역량 강화교육	22.10.19. (수)	세종시청	350명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 방안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23. 6. 1. (목)	세종시청	350명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 방안 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24. 6. 1. (토)	세종시청	350명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바람직한 역할 제고 방안 등

5. 관련기관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 어머니 연합회 구성은<sup>9)</sup>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홍보국장, 교육국장으로 구성. 회원은 52개 초등학교, 중학교 22개교 19,304명이 등록되어 있음.

· 주요활동은 초등학교 등·하교 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사고 예방 홍보, 관할 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지원 및 교육,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 등임.<sup>10)</sup>

<표 III-19> 녹색 어머니 연합회 구성

관할경찰서	구성학교	임원구성	등록인원
북부서	5개교	회장1, 부회장1인, 감사1인	2,266명
남부서	17개교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 사무국장1인	17,038명

9) 녹색 어머니 연합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경찰청>.

10) 스크린 및 우회적 횡단보도 일시 정지 홍보 초등학교 40개소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서와 정기 간담회 워크숍 개최하여 교통행정에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보행자 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적극 홍보.

제4절 국내의 치안 거버넌스 현황

1. 국내

1)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개발한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앱’을 통해 자율방범대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 개선에 나섬.<sup>11)</sup>

· 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28일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 시·군 경찰서 치안 업무 담당자 및 자율방범대와 함께 간담회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과 통(通)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APP)’을 개발해 상반기부터 4개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자치단체에 시범 운영됨. 이에 따라 시·군 경찰서 자율 방범 업무담당자 및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

· 자율방범대 순찰 지원 앱(APP)은 경찰청 범죄위험 예측 데이터, 주민들이 요청하는 단력 순찰 데이터 등을 결합해 자율방범대에게 효율적인 순찰 경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스마트폰에서 ‘자율방범순찰’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심 지도, 순찰 경로, 안전교육 등 메뉴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순찰 활동을 지원하며 직무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자경위는 해당 사업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전북중앙, 2024.3.28).

<그림 III-2> 전북자치경찰 순찰 앱



전북 자치경찰 도입 '순찰 앱' 화면 (전주=안광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과 통(通)하는 순찰 지원 앱'을 개발, 현장 사용을 위해 시·군 간담회 등이 지난 3.6일 있었다. 사진은 순찰 지원 앱 화면. 2024.3.16 |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dnnbbsr.com](http://dnnbbsr.com)

11)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 앱을 개발하고 운영중에 있음.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험수행하고 있는 것을 2025년 전북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함.

## 2) 부산광역시

-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안심귀가길 순찰봉사단(세이프프렌즈)팀’은 남구 대연동 부경대 인근에서 지도와 연동된 앱(세이프부산)을 개발하여 주민들과 치안정보를 공유하며 순찰등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열린뉴스통신, 2022.12.20).<sup>12)</sup>

<그림 III-3> 세이프티 부산 앱



세이프존 프로젝트 '세이프 부산' 앱 개발 및 순찰봉사단-부산경찰청 ©열린뉴스통신ONA

## 2. 해외 사례

### 1) 독일<sup>13)</sup>

- 바이에른주의 안전감시원은 정규 경찰에게 가두 범죄 발견 시에 즉시 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경찰지구대 조직체계상에 보조경찰과 같은 신분으로 직접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경찰과 같은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님.
- 한국의 정규 경찰과 자율방범대 간의 관계 정도로 볼 수 있음. 바이에른주의 경우 「안전감시제도 시범실시에 관한 법률」(1994.1.1.-1996.12.31.)이 지방자치단체인 뉘른베르크 잉골슈타트 및 데겐도르프 시에서 3년간 성공적인 시범 실시 후 안전감시법(Sicherheitsgesetz)이 발효되었음.

12) 2022년 치안리빙랩 사업으로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서 수행하였으나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음.

13) 신현기(2020: 147-149)

- 안전감시원은 범죄예방 활동과 동시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막고 질문(예를 들어 신분확인이나 이름 등) 할 권리를 가짐.

- 이들은 주로 대단위 주택단지, 공공시설 및 기물 파손률이 높은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순찰 봉사활동을 펼침. 안전감시원들은 보통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특히 도보 순찰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가두 범죄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규 경찰이 출동하도록 무전을 보냄

- 안전감시원은 일반적으로 자체 보호를 위한 자극성 스프레이 장치(CS 가스)를 몸에 소지하기도 함.

-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은 바로 우리 시민이 지킨다는 봉사 정신과 결연한 의지가 발동되어 함께 호흡한다는 점과 정규 경찰관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안전감시원들을 운용함으로써 치안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음.

- 바이에른주 안전감시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파란색 폴로 셔츠 또는 진한 파란색 미션 재킷을 입고 있음. 필요한 경우 추가로 노란색 경고 조끼를 걸치기도 하고 바이에른 주정부의 표장을 달고 안전감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야구 모자를 쓰고 순찰.

- 바이에른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도 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와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일체의 모든 비용은 주정부의 예산에서 100% 지원됨.

- 안전감시원으로 선발되려면 최소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최대 연령은 62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강하며 원하는 경우는 67세까지도 가능함.

- 안전감시원을 지원하는 시민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면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되 퇴근 후 순찰 봉사활동을 한달에 5~15시간 가능하며 타인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등 평판이 좋아야 함.

- 경찰기관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합격하면 실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약 40시간 가량의 교육훈련을 받음. 40시간의 현장 실무교육은 대부분 평일의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

과 같은 주말 시간을 많이 활용하며 40시간 동안 후보자들은 주로 법적인 상황, 경찰 구조 및 안전감시원의 권한 관련 지식을 심층적으로 습득한 후 15분 이내의 구두시험을 끝으로 마무리 됨.

- 안전감시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개의 지방경찰청은 매년 4개의 강제 추가 교육 과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관련 주제는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 및 보안, 응급처치 등이며 필요에 따라 자체 주제가 추가됨.

- 안전감시원 교육 내용의 경우 실질적인 법분야 교육에서 9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안전감시원이 불법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형법의 기본 원칙(일반 부분), 강도와 폭행 및 강압, 강간과 성 강요 및 노출증 행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범죄, 자동차와 자전거 도난 및 주변의 강도, 일반재산 피해, 차량과 공공 시설 손상, 무기법의 기본 원칙(무기 및 금지된 물건), 현지법 등을 정확히 익힌다. 수업은 자신의 주제나 지역 특성 또는 심층 학습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지방경찰청은 매년 4개의 강제 추가 교육과정을 실시. 안전감시원은 평일은 회사 퇴근 후 여가 시간 혹은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한달에 평균 5-15시간 정도를 가두 순찰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

- 주정부는 안전감시원 교육생들이 40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시간당 8유로(1유로는 한화로 1,400원 정도)의 실비(의복, 교통비, 서비스 비용, 식사비 포함)를 지급해 주고 있음.

- 순찰 활동 시 개인 차량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만일 사용하다가 자동차 관련 재산 피해의 발생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약 335유로 까지 보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부상당한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줌(신원기, 143-151).

## 2) 영국<sup>14)</sup>

- 특별경찰관제도임(Special Constable). 특별경찰관은 자발적 경찰관(volunteer police officers)으로도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런던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14) 김용훈(2023: 108-109)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 경찰관을 말함. 이들은 특히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치안과 변화를 유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특별경찰관은 정규 순경(a regular police constable)과 같은 권한(the same powers)을 보유하고 있고, 특별경찰관은 매년 최소 200시간, 즉 한달에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32개의 런던 자치구에 걸쳐 있는 12개의 기본 지휘부(Basic Command Units: BCU) 중 하나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이들은 정규 경찰관(regular police officers)과 같은 제복(the same uniform)을 착용하며 정규경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다각적인 역할(a variety of roles)까지 담당하고 있음.

- 특별경찰관은 도보 및 차량 순찰, 공익을 해하는 반사회적행동 규율(tackling antisocial behaviour), 도로 안전 대책 수립(road safety initiatives), 호별 방문 조사, 지역 및 주요 행사 개최 시 공공 안전 및 보안 보장 지원 등 다소 완화된 수준의 경찰 관련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번호(999번) 호출 응답, 법정 내 증거 제출, 미성년자 음주, 범죄 피해, 소란 행위(nuisance) 및 공적 무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사고 발생 지역' 내 작전('hotspot' operation) 참여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언 그리고 사적 재산관리 이니셔티브를 제고하는 역할 등 꽤 권력적인 행위까지 수행함.

- 특별경찰관에게는 (런던 내) 자유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수도 런던 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주인 Greater London 내에서의 지방세(council tax)를 할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런던경찰청에 의한 다양하고 친화적인 혜택과 할인까지 제공함.

- 특별경찰관은 본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서 봉사를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 시민들의 지위와 동시에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양 지위에 기반한 역할 수행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면서 양 기능을 동시에 실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거나 특별경찰관으로 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규경찰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

인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함.

### 3) 일본

· 일본 경찰청은 2004년 6월 '범죄에 강한 지역사회 플랜'을 완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안전 정보의 제공, 방법 강습, 방법훈련과 경찰과의 합동 순찰 실시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2006년에는 '지역 안전 안심 스테이션' 모델사업을 소방, 학교, 시·구·정·촌(市區町村)과 제휴하여 전국 100개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음.

· '지역 안전 안심 스테이션'은 방법순찰의 출근거점, 지역 안전 정보의 집약·발신 거점, 자주적 활동에의 참가, 확대의 거점이 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의해 지역주민에 의한 방법 순찰 등의 자주 방법 활동에 대해서 지역 안전 정보의 제공, 방법 강습·방법 훈련이나 경찰과의 합동 순찰 실시, 방법순찰용품(회중전등, 방법부저, 완장 등)의 무상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sup>15)</sup>

방법 CSR 활동이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번역되어 환경 보호, 지역 공헌 등 순수하게 재무적인 활동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주적 대처를 말함. 최근, 방법의 분야에서 활동에 수행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음. 방법 CSR 활동은,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회 만들기를 실현해, 지역주민 등의 안전 안심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임.<sup>16)</sup>

방법 CSR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경찰, 지방자치단체, 방법 자원봉사 단체 등이 실시하는 방법 활동에의 지원이나 직원에 의한 방법 순찰 등이 있음.

경찰에서는, 사업자 등에 방법 CSR 활동에 임하기 쉽도록 범죄 정보의 제공이나 활동 방법에 대한 조언 등을 실시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방법 봉사단체에 물품 제공 등 활동 지원
- 청색 방법 순찰차 및 방법등을 지자체 등에 기증
- 자사 상품에 방법 표어를 기재하여 방법 계발 추진

15) 미래한국. (2024.1.16.). 자율방법대는 주민이 생산하는 '치안 공공재'  
 16) <https://www.npa.go.jp/bureau/safetylife/bouhan/bouhancsr/bouhancsrkatudou.html>  
 (2024.10.25.검색)

- 직원에 의한 주 1회 방법 순찰
- 자판기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고 통학로에 폐쇄회로(CC)TV 정비

〈그림 III-4〉 일본 방법 CSR 활동



100,443, 남-76,676, 여-23,767), 2022년(조직 4,326, 인원 97,274, 남-72,083, 여-25,191)

#### IV.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효율성 및 조사분석

##### 제1절 효율성 분석

##### 1.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력, 치안

###### · 광역시·도별 자율방범대와 범죄검거 및 신고 현황

- 18개 광역시·도에 대한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원, 범인검거 실적, 범죄 신고 등을 2020년, 2021년, 2022년의 3년간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원은 2020년 4,221개, 100,693명이고, 2021년 4,223개, 100,443명, 2022년 4,326개, 97,274명으로 자율방범대 조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표 IV-1> 자율방범대, 범죄검거 및 신고 1(2020~2022년, 단위: 건)

지역	2020				2021				2022			
	조직	인원	검거 실적	범죄 신고	조직	인원	검거 실적	범죄 신고	조직	인원	검거 실적	범죄 신고
서울	427	9,985	219684	113399	429	9,922	189140	111099	481	9,816	192540	128649
부산	169	2,860	94536	27648	182	3,149	78412	29061	177	2,889	79655	34332
대구	164	4,076	59719	27700	164	3,984	54752	29349	171	3,822	53621	31375
인천	142	3,382	71762	37523	142	3,337	60697	39888	137	2,940	62634	41563
광주	82	1,688	37472	10467	83	1,668	33461	11801	92	1,984	31426	13251
대전	139	2,732	37376	18792	141	2,707	31997	19115	145	2,598	33425	20952
울산	70	2,426	26035	10458	70	2,439	24062	10795	68	2,367	22291	12369
세종	28	577	4,326	2,987	26	540	4,062	3,793	18	583	4,460	3,907
경기남	541	13,267	242154	130382	527	13,129	215055	131840	528	12,510	209330	140040
경기북	198	4,634	75830	34538	202	4,725	67591	34423	193	4,129	66187	40623
강원	254	7,730	38500	15645	252	7,724	33202	16045	276	7,043	34085	17591
충북	216	5,458	39625	16043	215	5,276	34798	15817	228	5,249	34755	17455
충남	329	7,123	49695	20944	324	7,084	42505	23999	289	6,825	44910	23838
전북	285	7,308	40322	9914	285	7,350	35661	11170	301	7,178	36496	13028
전남	351	7,764	44128	16957	346	7,706	39959	18651	345	7,846	38380	20395
경북	434	10,376	62513	21096	437	10,349	54086	21611	458	10,270	52943	23152
경남	372	8,688	78886	30232	376	8,727	70058	31109	390	8,494	69694	32749
제주	21	619	21697	11006	22	627	20222	10952	29	731	19754	11084

\* 2020년(조직 4,221, 인원100,693, 남-77,667, 여-23,026), 2021년(조직 4,223, 인원

- 세종시의 경우, 자율방범대조직은 2020년 28개에서 2021년 26개, 2022년에 18개로 줄어들었고, 대원의 경우 2020년 577명, 2021년 540으로 줄어들었다가 2022년 583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세종시의 범인 검거 실적 및 신고 건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 광역시·도별 자율방범대와 범죄검거 및 신고 현황

- 18개 광역시·도의 자율방범대, 범죄검거 및 신고 건수 등 3년 간의 평균 값(2020~2022년)은 다음과 같음.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원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범죄검거와 신고건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세종시의 경우도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원은 감소하나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검거는 늘어났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표 IV-2> 자율방범대, 범죄검거 및 신고 2(2020~2022년, 단위: 건)

구분	자율방범조직	자율방범인원	범인검거건 수	범죄신고건 수
서울	446	9908	200455	117716
부산	176	2966	84201	30347
대구	166	3961	56031	29475
인천	140	3220	65031	39658
광주	86	1780	34120	11840
대전	142	2679	34266	19620
울산	69	2411	24129	11207
세종	24	567	4283	3562
경기남부	532	12969	222180	134087
경기북부	198	4496	69869	36528
강원	261	7499	35262	16427
충북	220	5328	36393	16438
충남	314	7011	45703	22927
전북	290	7279	37493	11371
전남	347	7772	40822	18668
경북	443	10332	56514	21953
경남	379	8636	72879	31363
제주	24	659	20558	11014

· 광역시·도별 범죄 발생 추이

- 광역시·도의 전체 범죄 발생비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검토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발생비는 지역별 발생건 수를 10만으로 곱하고, 이를 주민등록인구 수로 나눈 값임.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발생비가 세종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범죄 발생 환경이 감소된 이윅가 큰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범죄 발생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 세종시의 경우 전체 범죄 발생비는 2019년 1,794건, 2020년 1,764건, 2021년 1,59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1,714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범죄 발생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IV-3〉 지역별 전체 범죄의 발생비 추이(2018~2022년, 단위:건)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3,164.1	3,178.8	3,063.3	2,712.8	2,964.5
부산	3,214.6	3,314.1	3,350.6	2,997.8	3,166.5
대구	2,938.6	3,108.9	2,992.7	2,847.1	2,825.5
인천	2,923.9	3,064.2	2,995.2	2,597.5	2,776.8
광주	2,985.5	3,039.8	3,001.0	2,732.5	2,718.3
대전	3,055.6	3,062.4	3,048.3	2,753.1	3,024.5
울산	2,835.2	2,855.4	2,762.4	2,593.2	2,456.7
세종	-	1,794.3	1,763.8	1,596.4	1,714.1
경기	2,974.2	2,978.0	2,936.1	2,633.5	2,682.5
강원	2,931.4	2,990.3	2,888.9	2,573.5	2,714.9
충북	3,021.1	3,005.3	2,989.9	2,716.7	2,762.0
충남	2,810.1	2,950.8	2,904.8	2,558.6	2,788.3
전북	2,610.1	2,652.8	2,629.9	2,442.8	2,554.2
전남	2,708.1	2,820.0	2,782.5	2,639.7	2,644.1
경북	2,777.8	2,905.2	2,794.6	2,495.7	2,573.7
경남	2,675.4	2,861.3	2,933.9	2,651.6	2,708.5
제주	4,110.8	3,888.3	4,021.3	3,770.2	3,849.1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sup>2)</sup>

· 자율방범대 활동 추이

-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운영되는 자율봉사단체임. 주로 지역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순찰 활

동, 청소년 선도, 범죄 취약 요인 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경찰과 형사범 합동으로 검거하고, 범죄 신고를 적극화하여 지역사회에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 함.

- 자율방범대의 경찰과의 협력성과는 치안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2012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은 763건, 범죄신고 건수는 4,119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단순히 범죄예방이라는 소극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경찰과의 공동활동, 합동 검거, 범죄 신고 등 적극적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는 것임.

〈표 IV-4〉 자율방범대 합동 검거 실적 현황

구 분	형사범 합동 검거 실적	범죄신고
2008	3,183	9,444
2009	2,106	8,851
2010	400	3,775
2011	657	4,752
2012	763	4,119

자료: 경찰청(2009-2013), 재구성

2. DEA를 통한 자율방범대 효율성 분석

1) 2020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광역시·도별 효율성

- 18개 광역시·도에 대한 DEA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 제주도의 효율성(E=1)이 100%로써 가장 높았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부서는 효율성(E=1) 1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효율성은 45% 정도이고, 광역시의 효율성 평균은 0.5049로 50%대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효율성 평균은 0.4058로 광역시가 광역도 보다 효율성 값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역시의 경우, 대전, 울산, 대구, 세종의 효율성이 다소 낮은데,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력이 적었기 때문으로 이해됨.

-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조직과 인력에 비해 효율성은 다소 보통 이하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 서울, 인천, 광주보다는 낮게 나타남. 따라서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IV-5> 2020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구분	CRS	VRS	SE	규모수익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서울	0.6387	1.0000	0.6387	DRS
	부산	0.8144	1.0000	0.8144	DRS
	대구	0.4065	0.5531	0.7349	DRS
	인천	0.6240	0.9002	0.6932	DRS
	광주	0.5417	0.5496	0.9856	IRS
	대전	0.3892	0.4913	0.7922	DRS
	울산	0.3341	0.3397	0.9835	IRS
	세종	0.2910	1.0000	0.2910	IRS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포함)	경기남부	0.5527	1.0000	0.5527
경기북부		0.4515	0.6322	0.7142	DRS
강원		1.0000	1.0000	1.0000	CRS
충북		0.1937	0.2257	0.8582	DRS
충남		0.1882	0.2364	0.7961	DRS
전북		0.1313	0.1346	0.9755	IRS
전남		0.1495	0.1753	0.8528	DRS
경북		0.1534	0.1868	0.8212	DRS
경남		0.2386	0.3163	0.7543	DRS
제주		1.0000	1.0000	1.0000	CRS

· 광역시·도별 효율성 그래프

- 전반적으로 광역시·도의 평균 효율성은 45% 정도로 나타났음. 여기서 효율성 값은 상대적인 값을 갖고 있으므로 광역시·도별 비교를 통해 비효율성 값을 제시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부산과 강원, 제주의 범죄 신고와 검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방범대 조직을 강화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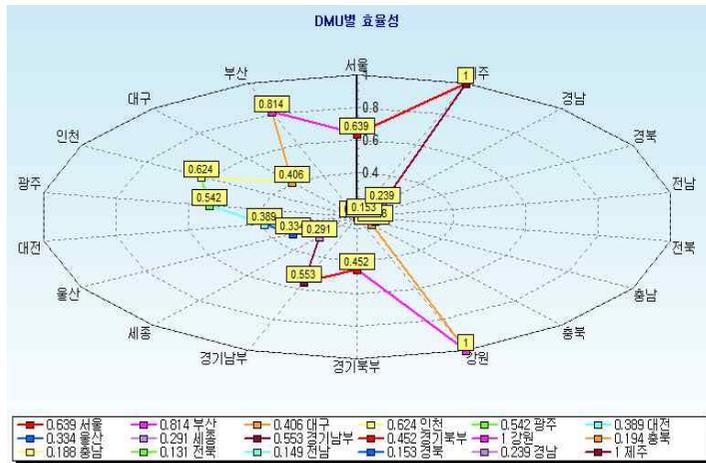
<그림 IV-1> 2020년 광역시·도별 효율성(1)



· 광역시·도별 DMU

- 효율성 E=1인 경우, 타원형의 제일 바깥 원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음.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광역시도 일수록 종간의 작은 원안에 위치하게 됨. 전체적으로 40%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 부서는 중간에 위치하나 90~100%의 효율성을 갖춘 부서는 바깥 원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IV-2> 2020년 광역시·도별 효율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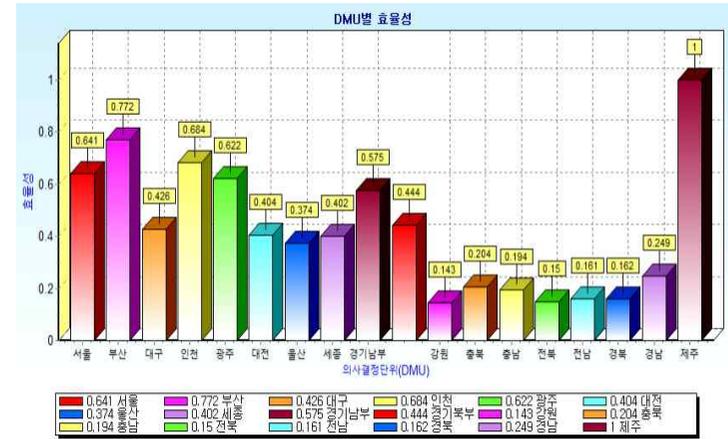
2) 2021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표 IV-6> 2021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광역시·도별 효율성

- 18개 광역시·도에 대한 DEA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지역의 효율성(E=1) 매우 높지만, 다른 지역은 효율성이 높지 못함.
- 전체 효율성은 42% 정도이고, 광역시의 효율성 평균은 0.5407로 54%대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효율성 평균은 0.3282로 광역시가 광역도 보다 효율성 값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역시의 경우,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의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음. 광역도는 제주,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낮은데, 이는 범죄 신고 및 검거가 자율방범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2020년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전, 울산에 비해 높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음. 따라서 세종시의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은 자율방범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종 자체의 범죄율이 낮거나 치안 여건이 더 좋아 자율방범대 효율성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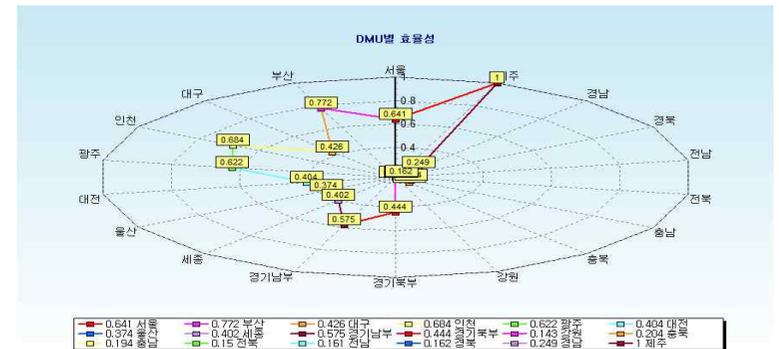
구분		CRS	VRS	SE	규모수익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서울	0.6410	1.0000	0.6410	DRS
	부산	0.7721	1.0000	0.7721	DRS
	대구	0.4261	0.6415	0.6642	DRS
	인천	0.6843	0.9927	0.6893	DRS
	광주	0.6220	0.7199	0.8640	DRS
	대전	0.4043	0.5115	0.7904	DRS
	울산	0.3740	0.4465	0.8376	DRS
	세종	0.4021	1.0000	0.4021	IRS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포함)	경기남부	0.5749	1.0000	0.5749	DRS
	경기북부	0.4435	0.6781	0.6540	DRS
	강원	0.1433	0.2114	0.6779	DRS
	충북	0.2045	0.2678	0.7636	DRS
	충남	0.1939	0.2606	0.7441	DRS
	전북	0.1504	0.2077	0.7241	DRS
	전남	0.1608	0.2094	0.7679	DRS
	경북	0.1620	0.2385	0.6792	DRS
	경남	0.2489	0.3812	0.6529	DRS
	제주	1.0000	1.0000	1.0000	CRS



· 광역시·도별 DMU

- 효율성 E=1인 제주도의 경우, 타원형의 제일 바깥 원의 접점에 자리잡고 있음. 그리고 상대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광역시·도는中间的 작은 원안에 위치하게 됨. 전체적으로 42%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 부서는 중간에 위치하나 90~100% 효율성을 갖춘 부서는 바깥 원에 위치함.

<그림 IV-4> 2021년 DMU효율성(2)



3) 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 광역시·도별 효율성 그래프

- 전체적으로 광역시·도의 평균 효율성은 42% 정도로 2020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광역시·도별 효율성 값은 상대적이므로 광역시·도별 비교를 통해 비효율성 값을 제시할 수 있음.
-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상대적 효율성(E=1)이 높은 제주의 범죄 신고와 검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방범대 조직 및 인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림 IV-3> 2021년 DMU효율성(1)

· 광역시·도별 효율성

- 광역시·도 18개에 대한 DEA 상대적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광역시는 부산지역, 광역도는 제주지역의 상대적 효율성(E)은 100%로 나타났음.
- 전체 효율성은 42% 정도이고, 광역시의 효율성 평균은 0.6877로 69%대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효율성 평균은 0.3916으로 광역시가 광역도 보다 효율성 값이 28% 이상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역시의 경우, 울산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 광역도는 제주, 경기를 제외하고는 30% 이하의 낮은 평균 효율성을 보이며,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57%로 2020년, 2021년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부산, 인천, 서울에 비해서는 낮았음. 따라서 세종시의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점차 증가하였고, 세종시의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CRS	VRS	SE	규모수익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	서울	0.8644	1.0000	0.8644	DRS
	부산	1.0000	1.0000	1.0000	CRS
	대구	0.5414	0.6651	0.8140	DRS
	인천	0.9324	1.0000	0.9324	DRS
	광주	0.5825	0.6287	0.9265	DRS
	대전	0.5319	0.5567	0.9555	DRS
	울산	0.4812	0.5193	0.9266	DRS
	세종	0.5679	1.0000	0.5679	IRS
광역도 (특별자치도 포함)	경기남부	0.7383	1.0000	0.7383	DRS
	경기북부	0.6489	0.7539	0.8607	DRS
	강원	0.1813	0.2339	0.7751	DRS
	충북	0.2442	0.2901	0.8418	DRS
	충남	0.2429	0.3169	0.7665	DRS
	전북	0.1878	0.2338	0.8033	DRS
	전남	0.1803	0.2183	0.8259	DRS
	경북	0.1899	0.2424	0.7834	DRS
	경남	0.3019	0.3916	0.7709	DRS
	제주	1.0000	1.0000	1.0000	CRS

· 광역시·도별 효율성 그래프

- 광역시·도의 평균 효율성은 54% 정도로 2021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평균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시도별 비교를 통해 비효율성 값을 제시할 수 있음.
- 효율성이 높은 부산, 제주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확장하고 인력을 늘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효율성이 높은 부산, 제주 지역을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IV-7> 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그림 IV-5> 2022년 DMU효율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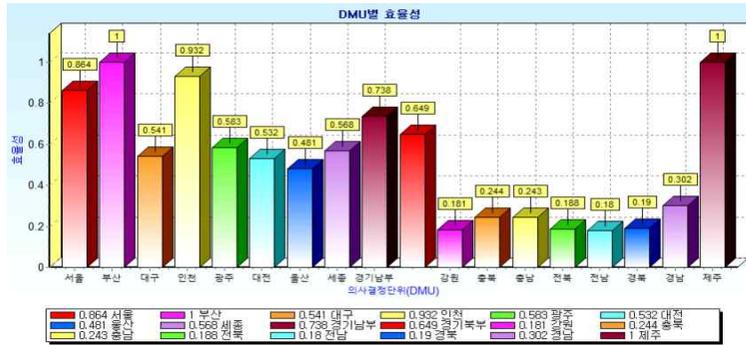
#### 4) 2020~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 평균

##### · 광역시·도별 평균효율성

- 3년간의 광역시·도 18개에 대한 평균 DEA 상대적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제주지역만이 상대적 효율성(E)은 100%로 나타났음. 따라서 제주는 범죄 신고 및 예방 활동이 자율방범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년간의 평균 효율성은 45% 정도이고, 광역시의 효율성 평균은 0.5810으로 58%대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효율성 평균은 0.3482로 광역시가 광역도 보다 효율성 값이 2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역시는 부산, 서울, 인천 등이 효율성이 높았고, 광역도는 제주, 경기 등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광역시가 광역도 보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존성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볼 때, 앞으로 광역도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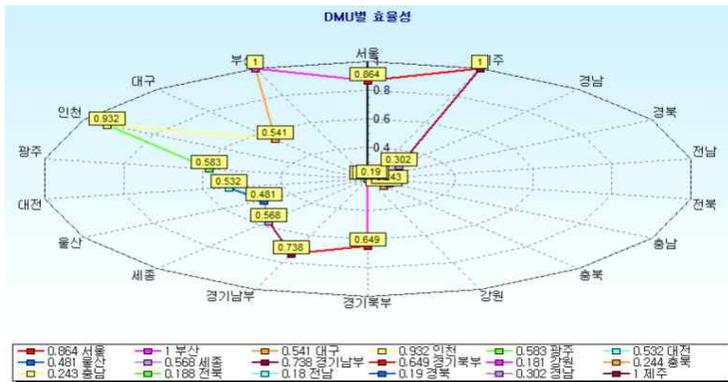
- 세종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2020년 29%, 2021년 42%, 2022년 57%로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3년간의 평균 효율성은 38%이지만, 매년 자율방범대의 중요성과 의존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광역시·도별 DMU

- 효율성 E=1인 부산과 제주도의 경우, 타원형의 제일 바깥 원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음. 그리고 상대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시도는 중간에 작은 원안에 위치하게 됨. 전체적으로 54%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 부서는 중간에 위치하나 90~100% 효율성을 갖춘 부서는 바깥 원에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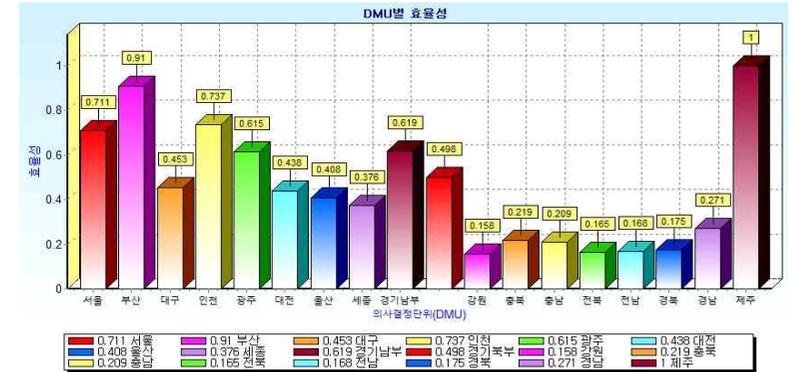
<그림 IV-6> 2022년 DMU효율성(2)



<표 IV-8> 2020~2022년 자율방범대 효율성(3년간 평균)

구분	CRS	VRS	SE	규모수익	
광역시 (특별자치 시포함)	서울	0.7109	1.0000	0.7109	DRS
	부산	0.9100	1.0000	0.9100	DRS
	대구	0.4534	0.6459	0.7020	DRS
	인천	0.7369	0.9806	0.7515	DRS
	광주	0.6145	0.6552	0.9379	DRS
	대전	0.4382	0.5244	0.8356	DRS
	울산	0.4082	0.4692	0.8700	DRS
	세종	0.3759	1.0000	0.3759	IRS
광역시도 (특별자치 도포함)	경기남부	0.6186	1.0000	0.6186	DRS
	경기북부	0.4982	0.7057	0.7060	DRS
	강원	0.1577	0.2241	0.7037	DRS
	충북	0.2190	0.2779	0.7881	DRS
	충남	0.2090	0.2651	0.7884	DRS
	전북	0.1651	0.2197	0.7515	DRS
	전남	0.1684	0.2069	0.8139	DRS
	경북	0.1753	0.2446	0.7167	DRS
	경남	0.2705	0.3872	0.6986	DRS
	제주	1.0000	1.0000	1.0000	C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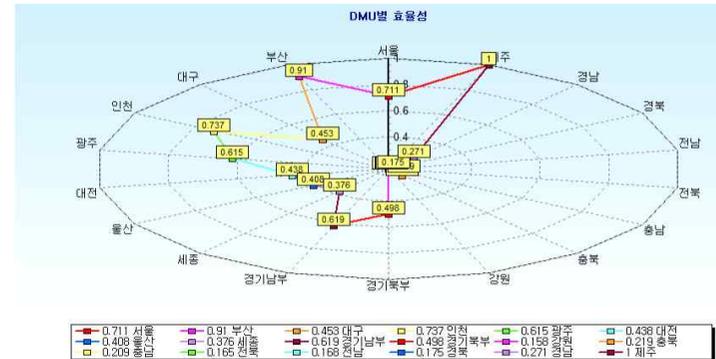
<그림 IV-7> 평균 DMU효율성(1)



광역시·도별 DMU

- 2020~2022년 평균 효율성(E)이 100%인 부산과 제주도의 경우, 타원형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평균 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시·도는 중간 위치하게 됨. 전체적으로 45%의 효율성을 갖게 되는 부서는 중간에 위치하나 90~100% 효율성을 갖춘 부서는 바깥 원에 위치함.

<그림 IV-8> 평균 DMU효율성(2)



광역시·도별 평균 효율성 그래프

- 광역시의 평균 효율성은 전체 45% 수준이지만, 광역시는 58%, 광역도는 35% 수준으로 나타남. 광역시 중에는 부산이 91%로 높고, 광역도 중에는 제주 100%로 나타나, 시도별 비교를 통해 비효율성 값을 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부산, 제주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율방범대 조직을 만들고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5) 자율방범대 효율성 평균 종합

· 광역시·도별 평균 효율성

-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효율성은 광역시 평균은 58%, 광역도 평균은 35%로 나타남.
- 광역시는 2020년 50%, 2021년 54%, 2022년 6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방범대 효율성은 증가하면서, 자율방범대 조직, 인력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도는 2020년 41%, 2021년 33%, 2022년 39%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높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이지 않음.
- 세종시의 경우, 자율방범대 효율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율방범대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효율성 값이 높은 지역인 부산, 제도 정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범죄 신고 및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율방범 조직을 늘이거나 대원들의 참여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안이 요구됨.

<표 IV-9> 평균 DMU 효율성

DMU	X1 조직	X2 인원	Y1 검거실적	Y2 범죄신고	CRS 효율성	VRS 효율성	SE 효율성	규모수익
서울	446	9908	200455	117716	0.7109	1.0000	0.7109	DRS
부산	176	2966	84201	30347	0.9100	1.0000	0.91	DRS
대구	166	3961	56031	29475	0.4534	0.6459	0.702	DRS
인천	140	3220	65031	39658	0.7369	0.9806	0.7515	DRS
광주	86	1780	34120	11840	0.6145	0.6552	0.9379	DRS
대전	142	2679	34266	19620	0.4382	0.5244	0.8356	DRS
울산	69	2411	24129	11207	0.4082	0.4692	0.87	DRS
세종	24	567	4283	3562	0.3759	1.0000	0.3759	IRS
경기남부	532	12969	222180	134087	0.6186	1.0000	0.6186	DRS
경기북부	198	4496	69869	36528	0.4982	0.7057	0.706	DRS
강원	261	7499	35262	16427	0.1577	0.2241	0.7037	DRS
충북	220	5328	36393	16438	0.2190	0.2779	0.7881	DRS
충남	314	7011	45703	22927	0.2090	0.2651	0.7884	DRS
전북	290	7279	37493	11371	0.1651	0.2197	0.7515	DRS
전남	347	7772	40822	18668	0.1684	0.2069	0.8139	DRS
경북	443	10332	56514	21953	0.1753	0.2446	0.7167	DRS
경남	379	8636	72879	31363	0.2705	0.3872	0.6986	DRS
제주	24	659	20558	11014	1.0000	1.0000	1.0000	CRS

## 제2절 설문조사 및 분석

### 1. 일반현황

· 본 연구는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세종시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 설문지 총 555부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503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함. 최종 응답자 503명 중 자율방범대원은 399명이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으로 구성됨.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총 503명(남성 218명, 여성 28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남성 165명(41.35%), 여성 234명(58.65%)이 응답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남성 53명(50.96%), 여성 51명(49.04%)이 응답하였음.

〈표 IV-10〉 응답자별 성별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남	165	41.35	53	50.96	218	43.34
여	234	58.65	51	49.04	285	56.66
합계	399	100.0	104	100.0	503	100.0

· 연령에서는 총 501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자율방범대원은 60대 이상 158명(39.80%), 50대 149명(37.53%), 40대 71명(17.88%), 30대 13명(3.27%), 20대 6명(1.51%)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30대 37명(35.58%), 40대 34명(32.69%), 50대 18명(17.31%), 20대 10명(9.62%), 60대 이상 5명(4.81%) 순으로 구성됨.

〈표 IV-11〉 응답자별 연령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20대	6	1.51	10	9.62	16	3.19
30대	13	3.27	37	35.58	50	9.98
40대	71	17.88	34	32.69	105	20.96
50대	149	37.53	18	17.31	167	33.33
60대 이상	158	39.80	5	4.81	163	32.53
합계	397	100.0	104	100.0	501	100.0

· 학력 구성에서는 총 440명 중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대학 졸업 163명(48.22%), 고졸 이하 158명(46.75%), 대학원 이상 17명(5.03%)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대학 졸업 81명(79.41%), 대학원 이상 14명(13.73%), 고졸 이하 7명(6.86%)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IV-12〉 응답자별 학력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고졸 이하	158	46.75	7	6.86	165	37.50
대학 졸업	163	48.22	81	79.41	244	55.45
대학원 이상	17	5.03	14	13.73	31	7.05
합계	338	100.0	102	100.0	440	100.0

· 응답자별 혼인상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기혼 335명(87.01%), 미혼 29명(7.53%), 기타 7명(1.82%), 별거 1명(0.26%)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기혼 78명(75.00%), 미혼 26명(25.00%)으로 나타남.

〈표 IV-13〉 응답자별 혼인상태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미혼	29	7.53	26	25.00	55	11.25
기혼	335	87.01	78	75.00	413	84.46
이혼	13	3.38	-	-	13	2.66
별거	1	0.26	-	-	1	0.20
기타	7	1.82	-	-	7	1.43
합계	385	100.0	104	100.0	489	100.0

· 응답자별 자녀 여부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91.24%(354명)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67.31%(70명)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응답함.

〈표 IV-14〉 응답자별 자녀 여부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없음	34	8.76	34	32.69	68	13.82
있음	354	91.24	70	67.31	424	86.18
합계	388	100.0	104	100.0	292	100.0

· 자녀가 있는 응답자 424명의 자녀 수에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중 아들과 딸 1명을 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sup>17)</sup>.

- 자율방범대원 중 아들을 가진 응답자는 284명, 딸을 가진 응답자는 221명으로 나타났으며, 아들 1명의 비중이 67.25%, 딸 1명의 비중이 71.95%로 나타남.

17) 자녀가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나, 자녀 수를 기재하지 않은 28명(방범대원 26명, 세종시 공무원 2명)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 세종시 공무원 중 아들을 가진 응답자는 50명, 딸을 가진 응답자는 45명으로 나타났으며, 아들과 딸 1명의 비중이 각각 78.00%, 75.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표 IV-15〉 응답자별 자녀 수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1명	191(67.25)	159(71.95)	39(78.00)	34(75.56)	230(68.86)	193(72.56)
2명	87(30.63)	51(23.08)	10(20.00)	11(24.44)	97(29.04)	62(23.31)
3명 이상	6(2.11)	11(4.98)	1(2.00)	-	7(2.10)	11(4.14)
합계	284(100)	221(100)	50(100)	45(100)	334(100)	266(100)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중 아들만 있는 응답자는 424명 중 130명(30.86%)이었으며, 딸만 있는 응답자는 62명(14.83%)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 중 아들만 있는 응답자는 354명 중 107명(30.23%)으로 나타났으며, 딸만 있는 응답자는 44명(12.43%)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 중 아들만 있는 응답자는 70명 중 23명(32.86%)으로 나타났으며, 딸만 있는 응답자는 18명(25.71%)으로 나타남.

· 이 중 204명(48.11%)이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범대원 354명 중 177명(50.00%)과 세종시 공무원 70명 중 27명(38.57%)이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아 자녀가 모두 있는 응답자 204명 중 아들 1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는 149명, 아들 1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는 23명, 아들 1명과 딸 3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는 6명, 아들 2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는 20명, 아들 2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는 2명, 아들 2명과 딸 2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는 2명, 아들 3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는 1명, 아들 3명 이상과 딸 3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는 1명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 177명에서는 아들 1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가 128명, 아들 1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가 20명, 아들 1명과 딸 3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가 6명, 아들 2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가 17명, 아들 2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가 2명, 아들 2명과 딸 3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가 2명, 아들 3명 이상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가 1명, 딸 3명 이상을 가진 응답자가 1명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 27명에서는 아들 1명과 딸 1명을 가진 응답자가 21명, 아들 1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가 3명, 아들 2명과 딸 2명을 가진 응답자가 3명으로 나타남.

〈표 IV-16〉 응답자별 자녀 성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아들	107	32.62	23	33.82	130	32.83
딸	44	13.41	18	26.47	62	15.66
아들 & 딸	177	53.96	27	39.71	204	51.52
합계	328	100.0	68	100.0	396	100.0

· 소득에 관한 문항에서는 총 484명 중 자율방범대원 381명, 세종시 공무원 103명이 응답하였으며, 월 300~400만 원 구간이 125명(2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500만 원 구간 110명(22.73%), 300만 원 미만 99명(20.45%), 600만 원 초과 89명(18.39%), 500~600만 원 구간(12.60%) 순으로 나타남.

- 세부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월 300~400만 원, 400~500만 원, 300만 원 미만, 600만 원 초과, 500~6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300~400만 원, 500~600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IV-17〉 응답자별 월 소득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300만 원 미만	77	20.21	22	21.36	99	20.45
300~400만 원	108	28.35	17	16.50	125	25.83
400~500만 원	89	23.36	21	20.39	110	22.73
500~600만 원	48	12.60	13	12.62	61	12.60
600만 원 초과	59	15.49	30	29.13	89	18.39
합계	381	100.0	103	100.0	484	100.0

· 응답자별 직업 구성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주부가 109명(27.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영업 95명(23.87%), 회사원 86명(21.61%), 기타 60명(15.08%), 전문직 26명(6.53%), 공공기관 11명(2.76%), 공무원 7명(1.76%), 언론인 3명(0.75%), 학생 1명(0.25%) 순으로 나타남.

〈표 IV-18〉 응답자별 직업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학생	1	0.25	-	-	1	0.20
회사원	86	21.61	3	2.91	89	17.76
공공기관	11	2.76	4	3.88	15	2.99
공무원	7	1.76	84	81.55	91	18.16
자영업	95	23.87	1	0.97	96	19.16
주부	109	27.39	7	6.80	116	23.15
언론인	3	0.75	-	-	3	0.60
전문직	26	6.53	-	-	26	5.19
기타	60	15.08	4	3.88	64	12.77
합계	389	100.0	103	100.0	501	100.0

· 응답자별 주거유형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아파트가 258명(66.49%), 단독주택 107명(27.58%), 연립 & 다세대 주택 18명(4.64%), 기타 3명(0.77%), 고급빌라 2명(0.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도 아파트가 92명(90.20%)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IV-19〉 응답자별 주거유형 구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단독	107	27.58	5	4.90	112	22.86
연립 & 다세대	18	4.64	3	2.94	21	4.29
아파트	258	66.49	92	90.20	350	71.43
고급빌라	2	0.52			2	0.41
기타	3	0.77	2	1.96	5	1.02
합계	388	100.0	102	100.0	490	100.0

· 응답자별 주거환경에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모두 주거환경의 경우 주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IV-20〉 응답자별 주거환경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주택가	337	91.58	94	94.00	431	92.09
상가	18	4.89	4	4.00	22	4.70
유흥가	1	0.27	1	1.00	2	0.43
공장 주변	3	0.82	-	-	3	0.64
기타	9	2.45	1	1.00	10	2.14
합계	368	100.0	100	100.0	4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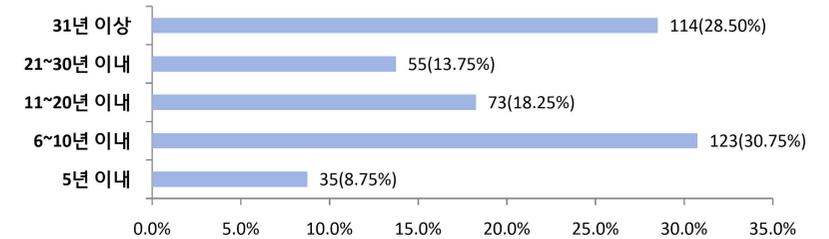
· 세종시 거주기간에 관한 질문에는 총 503명 중 자율방범대원은 400명, 세종시 공무

원은 103명이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거주기간 중에서 6~10년 이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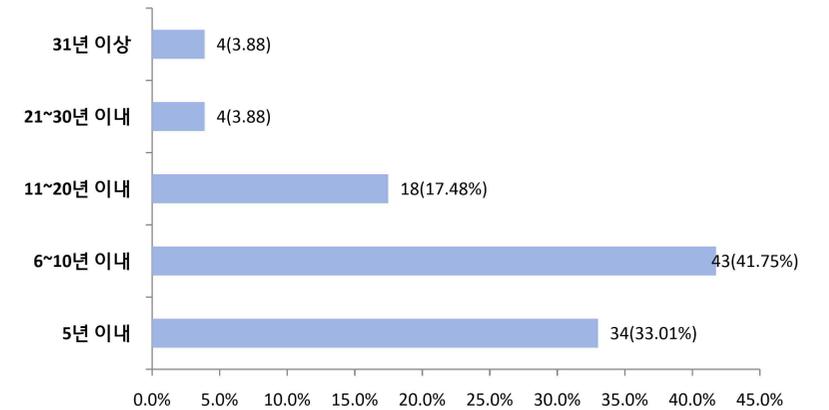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6~10년 이내 128명(30.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년 이상 114명(28.50%), 11~20년 이내 73명(18.25%), 21~30년 이내 55명(13.75%), 5년 이내 35명(8.75%)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6~10년 이내 43명(41.75%), 5년 이내 34명(33.01%), 11~20년 이내 18명(17.48%), 21~30년 이내와 31년 이상은 각각 4명(3.88%)으로 나타남.

〈그림 IV-9〉 응답자별 거주기간: 자율방범대원



〈그림 IV-10〉 응답자별 거주기간: 세종시 공무원



· 지난 일주일간 세종시 거주 빈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모두 일주일 동안 세종시에 거주한 응답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표 IV-21〉 응답자별 지난 일주일간 세종시 거주 빈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3일 이내	10	2.68	1	0.97	11	2.31
4~5일	26	6.97	11	10.68	37	7.77
일주일	337	90.35	91	88.35	428	89.92
합계	373	100.0	103	100.0	476	100.0

· 참여 단체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한 381명 중 시민단체가 183명(48.0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동호회 61명(16.01%), 공익단체 41명(10.76%), 기타 38명(9.97%), 없음 32명(8.40%), 위원회 26명(6.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없음이 84명(80.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동호회로 응답한 67명 중 53명은 운동(축구, 탁구,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트레킹, 댄스, 골프, 산악회 등) 35명, 모임(향토, 친목 등) 8명, 취미활동(오카리나, 미용, 색소폰, 사물놀이, 자동차, 바이크 등) 10명으로 나타남(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운동 6명으로 나타남)

〈표 IV-22〉 응답자별 참여 단체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동호회	61	16.01	6	5.77	67	13.81
시민단체	183	48.03	5	4.81	188	38.76
공익단체	41	10.76	2	1.92	43	8.87
위원회	26	6.82	4	3.85	30	6.19
기타	38	9.97	3	2.88	41	8.45
없음	32	8.40	84	80.77	116	23.92
합계	381	100.0	104	100.0	4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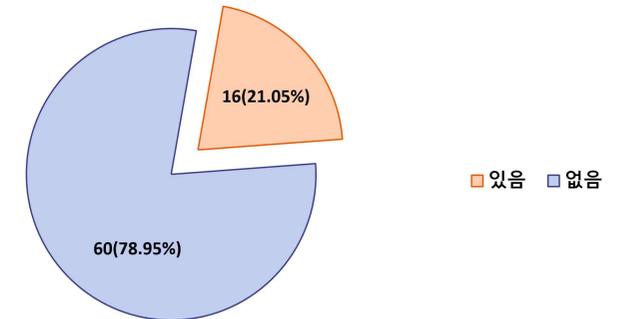
· 현재 상태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대부분이 자율방범대원(96.18%)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시 공무원(83.51%)이 대다수를 차지함.

〈표 IV-23〉 응답자별 현재 상태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자율방범대원	378	96.18	2	2.06	380	77.55
시 공무원	6	1.53	81	83.51	87	17.76
시의원	2	0.51			2	0.41
각종 위원회	2	0.51	1	1.03	3	0.61
시민단체 및 기타	5	1.27	13	13.40	18	3.67
합계	393	100.0	97	100.0	490	100.0

·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향후 자율 방범 활동 참여 의사를 설문한 내용에서는 76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16명(21.05%),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가 60명(78.95%)으로 나타남.

〈그림 IV-11〉 자율 방범 활동 참여 의사



##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 일반 질문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한 일반 질문에 관한 응답에서도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을 구분하여 바라보았으며,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봄.

· 지역 치안 활동 만족도에 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 496명 중 269명(54.23%)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72)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3.53)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한 자율방범대원 392명 중 227명(57.91%)이 지역 치안 활동에 만족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42명(40.39%)이 지역 치안 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표 IV-24〉 지역 치안 활동 만족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불만족	23	5.87%	3	2.88%	26	5.24%	1.628 (.104)
약간 불만족	13	3.32%	4	3.85%	17	3.43%	
보통	129	32.91%	55	52.88%	184	37.10%	
약간 만족	112	28.57%	19	18.27%	131	26.41%	
매우 만족	115	29.34%	23	22.12%	138	27.82%	
합계	392	100.00%	104	100.00%	496	10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 활동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치안)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응답자 490명 중 393명(80.21%)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두 집단 간 평균에서의 차이는 자율방범대원(평균 4.38)이 세종시 공무원(평균 3.83)보다 통계적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치안)에 도움이 된다고 하

는 응답자가 386명 중 330명(85.49%)이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63명(60.58%)으로 나타남.

〈표 IV-25〉 자율방범대 활동 세종시 안전(치안) 도움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 안 됨	3	0.78	1	0.96	4	0.82	5.912 (.000)***
도움이 별로 안 됨	6	1.55	5	4.81	11	2.24	
보통	47	12.18	35	33.65	82	16.73	
약간 도움이 됨	116	30.05	33	31.73	149	30.41	
매우 도움	214	55.44	30	28.85	244	49.80	
합계	386	100.0	104	100.0	490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전반적 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응답자 491명 중 334명(68.03%)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80)과 세종시 공무원 (평균 4.17) 간 차이는 세종시 공무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88명 중 249명(64.17%)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세종시 공무원은 103명 중 85명(82.52%)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반적 안전도가 높다고 인식함.

〈표 IV-26〉 세종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9	2.32	-	-	9	1.83	-3.610 (.000)***
낮음	23	5.93	-	-	23	4.68	
보통	107	27.58	18	17.48	125	25.46	
높음	148	38.14	50	48.54	198	40.33	
매우 높음	101	26.03	35	33.98	136	27.70	
합계	388	100.0	103	100.0	491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주간 교통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응답자 488명 중 301명(61.68%)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67)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4.04) 간 평균 차이에서는 세종시 공무원의 주간 교통안전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85명 중 223명(57.92%)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주간 교통안전도 인식이 78명(75.73%)으로 나타남.

〈표 IV-27〉 세종시 주간 교통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8	2.08	-	-	8	1.64	-3.644 (.000)***
낮음	26	6.75	1	0.97	27	5.53	
보통	128	33.25	24	23.30	152	31.15	
높음	145	37.66	48	46.60	193	39.55	
매우 높음	78	20.26	30	29.13	108	22.13	
합계	385	100.0	103	100.0	488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야간 교통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응답자 488명 중 278명(56.97%)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59)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3.85) 간 차이는 자율방범대원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은 384명 중 206명(53.65%)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72명(69.23%)이 높다고 인식하였음.

〈표 IV-28〉 세종시 야간 교통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9	2.34	-	-	9	1.84	-2.367 (.018)*
낮음	34	8.85	11	10.58	45	9.22	
보통	135	35.16	21	20.19	156	31.97	
높음	132	34.38	45	43.27	177	36.27	
매우 높음	74	19.27	27	25.96	101	20.70	
합계	384	100.0	104	100.0	488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주간 치안 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응답자 485명 중 333명(68.66%)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84)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4.17) 간 주간 치안 안전도 차이에는 자율방범대원이 세종시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81명 중 248명(65.09%)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85명(81.73%)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세종시 주간 치안 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7	1.84	-	-	7	1.44	-3.302 (.001)***
낮음	19	4.99	-	-	19	3.92	
보통	107	28.08	19	18.27	126	25.98	
높음	142	37.27	48	46.15	190	39.18	
매우 높음	106	27.82	37	35.58	143	29.48	
합계	381	100.0	104	100.0	485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야간 치안 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490명 중 307명(62.66%)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74)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3.89)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86명 중 234명(60.63%)이 야간 치안 안전도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73명(70.19%)이 높다고 인식함.

〈표 IV-30〉 세종시 야간 치안 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8	2.07	1	0.96	9	1.84	-1.506 (.123)
낮음	23	5.96	5	4.81	28	5.71	
보통	121	31.35	25	24.04	146	29.80	
높음	144	37.31	46	44.23	190	38.78	
매우 높음	90	23.32	27	25.96	117	23.88	
합계	386	100.0	104	100.0	490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 안전도에 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는 490명 중 274명 (55.91%)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3.64)과 세종시 공무원 (3.74)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86명 중 207명(53.63%)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67명(64.43%)이 높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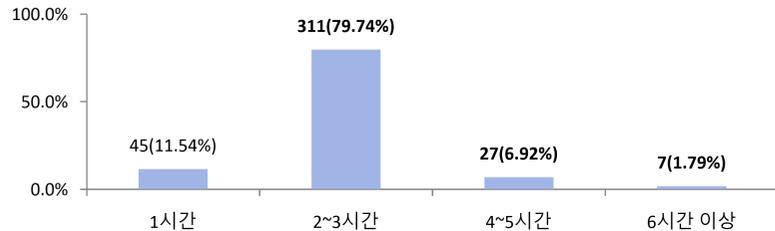
<표 IV-31> 세종시 청소년 활동 안전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7	1.81	3	2.88	10	2.04	- .952 (.341)
낮음	26	6.74	8	7.69	34	6.94	
보통	146	37.82	26	25.00	172	35.10	
높음	127	32.90	43	41.35	170	34.69	
매우 높음	80	20.73	24	23.08	104	21.22	
합계	386	100.0	104	100.0	490	1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원의 하루 적정 자율 방법 활동 시간을 질문한 내용에서는 응답자 390명 중 311명(79.74%)이 2~3시간을 적정 자율 방법 활동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45명(11.54%)이 1시간, 27명(6.92%)이 4~5시간, 7명(1.79%)이 6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2> 하루 적정 자율 방법 활동 시간: 자율방범대원



· 전반적 세종시 애정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483명 중 369명(76.39%)이 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방범대원(평균 4.36)과 세종시 공무원 (4.06) 간 평균 차이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더 유의하게 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379명 중 299명(78.89%)이 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공무원은 104명 중 70명(67.31%)명이 애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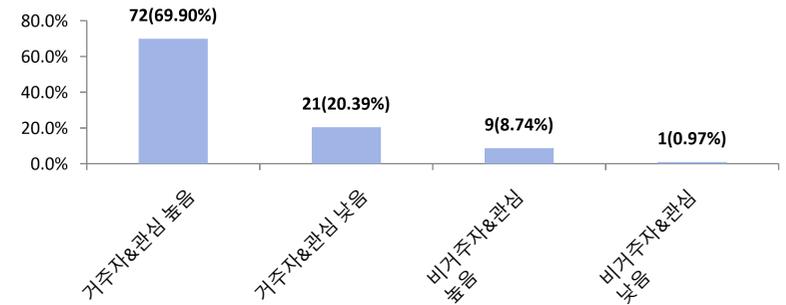
<표 IV-32> 세종시 애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전혀 없음	1	0.26	-	-	1	0.21	3.053 (.002)**
거의 없음	11	2.90	5	4.81	16	3.31	
보통	68	17.94	29	27.88	97	20.08	
약간 있음	68	17.94	25	24.04	93	19.25	
매우 많음	231	60.95	45	43.27	276	57.14	
합계	379	100.0	104	100.0	483	100.0	

\*p<.1, \*\*p<.05, \*\*\*p<.01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종시 거주 여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 및 치안에 관한 관심도를 질문한 설문에서는 103명이 질문에 응답하였으며, 거주자이면서 안전 및 치안에 관심이 높은 응답자(69.90%)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3> 세종시 거주 여부 & 안전(치안) 관심도



· 본 연구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세종시 공무원을 구분하여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된 이유에 관해 설문함.

- 참여 이유에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을 얻기 위해'로 구분하여 설문함.

· 자율방범대원에 관한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를 평균으로 살펴본 것을 보면,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평균 4.2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4.16),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4.05),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3.89),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3.85),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3.64),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3.12),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을 얻기 위해(2.86) 순으로 나타남.

〈표 IV-33〉 평균별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 자율방범대원

순위	구분	Obs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387	1	5	4.28	0.86
2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364	1	5	4.16	0.88
3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359	1	5	4.05	0.94
4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	362	1	5	3.89	0.98
5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355	1	5	3.85	1.00
6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353	1	5	3.64	1.09
7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	346	1	5	3.12	1.25
8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을 얻기 위해	352	1	5	2.86	1.32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추후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될 주된 이유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4.01),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3.56),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3.49),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3.29),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3.12),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을 얻기 위해'(2.93),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2.91),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2.82) 순으로 나타남.

〈표 IV-34〉 평균별 추후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하게 될 주된 이유: 세종시 공무원

순위	구분	Obs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1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102	1	5	4.01	0.92
2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102	1	5	3.56	1.01
3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102	1	5	3.49	0.97
4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	102	1	5	3.29	1.08
5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102	1	5	3.12	1.15
6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을 얻기 위해	102	1	5	2.93	1.20
7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102	1	5	2.91	1.22
8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	102	1	5	2.82	1.23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응답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차이 검증을 한 결과에서는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설문 항목 중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다는 설문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59명 중 264명(73.54%),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2명 중 72명(70.58%)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남(자율방범대 평균 4.05, 세종시 공무원 평균 4.01).

〈표 IV-35〉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4	1.11%	2	1.96%	.383 (.702)
그렇지 않음	18	5.01%	1	0.98%	
보통	73	20.33%	27	26.47%	
그리함	125	34.82%	36	35.29%	
매우 그리함	139	38.72%	36	35.29%	
합계	359	100.00%	102	100.00%	

\*p<.1, \*\*p<.05, \*\*\*p<.01

· 설문 항목 중 지역 안전에 관한 봉사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87명 중 328명(84.75%)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53명(51.96%)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세종시 공무원(평균 3.56)보다 자율방범대원(평균 4.28)이 지역 안전 봉사를 더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 안전 봉사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4	1.03%	5	4.90%	7.200 (.000)***
그렇지 않음	13	3.36%	5	4.90%	
보통	42	10.85%	39	38.24%	
그리함	141	36.43%	34	33.33%	
매우 그리함	187	48.32%	19	18.63%	
합계	387	100.00%	102	100.00%	

\*p<.1, \*\*p<.05, \*\*\*p<.01

· 설문 항목 중 지역주민에 관한 봉사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64명 중 288명(79.12%)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51명(50.00%)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참여동기 이유(평균 4.16)와 의향(평균 3.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7〉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주민 봉사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3	0.82%	4	3.92%	6.651 (.000)***
그렇지 않음	12	3.30%	8	7.84%	
보통	61	16.76%	39	38.24%	
그리함	136	37.36%	36	35.29%	
매우 그리함	152	41.76%	15	14.71%	
합계	364	100.00%	102	100.00%	

\*p<.1, \*\*p<.05, \*\*\*p<.01

· 설문 항목 중 지역주민들과 어울림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55명 중 226명(63.66%)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34명(33.3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참여동기 이유(평균 3.85)와 의향(평균 3.12)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8〉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지역주민과 어울림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7	1.97%	9	8.82%	6.319 (.000)***
그렇지 않음	22	6.20%	19	18.63%	
보통	100	28.17%	40	39.22%	
그리함	113	31.83%	19	18.63%	
매우 그리함	113	31.83%	15	14.71%	
합계	355	100.00%	102	100.00%	

\*p<.1, \*\*p<.05, \*\*\*p<.01

·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53명 중 199명(56.37%)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29명(28.43%)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자율방범대원(평균 3.64)이 세종시 공무원(평균 2.9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임.

〈표 IV-39〉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기존 방범대원과의 친분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14	3.97%	18	17.65%	5.746 (.000)***
그렇지 않음	37	10.48%	14	13.73%	
보통	103	29.18%	41	40.20%	
그려함	108	30.59%	17	16.67%	
매우 그려함	91	25.78%	12	11.76%	
합계	353	100.00%	102	100.00%	

\*p<.1, \*\*p<.05, \*\*\*p<.01

· 경찰 또는 공무원과의 관계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46명 중 126명(36.42%)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23명(22.55%)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자율방범대원(평균 3.12)의 응답이 세종시 공무원(평균 2.82)의 응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임.

〈표 IV-40〉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공무원과의 관계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43	12.43%	20	19.61%	2.078 (.038)*
그렇지 않음	62	17.92%	14	13.73%	
보통	115	33.24%	45	44.12%	
그려함	64	18.50%	10	9.80%	
매우 그려함	62	17.92%	13	12.75%	
합계	346	100.00%	102	100.00%	

\*p<.1, \*\*p<.05, \*\*\*p<.01

· 경찰의 방법 활동 지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62명 중 238명(65.74%)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39명(38.2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참여동기 이유(평균 3.89)와 의향(평균 3.2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표 IV-41〉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경찰의 방법 활동 도움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6	1.66%	7	6.86%	5.278 (.000)**
그렇지 않음	21	5.80%	11	10.78%	
보통	97	26.80%	45	44.12%	
그려함	122	33.70%	23	22.55%	
매우 그려함	116	32.04%	16	15.69%	
합계	362	100.00%	102	100.00%	

\*p<.1, \*\*p<.05, \*\*\*p<.01

· 방법 활동 인센티브에 관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352명 중 114명(32.39%)이, 세종시 공무원 102명 중 28명(27.46%)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자율방범대 평균 2.86, 세종시 공무원 평균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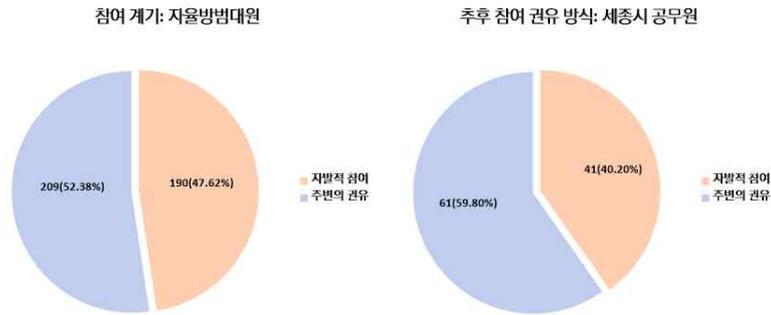
〈표 IV-42〉 참여동기 이유 및 의향: 인센티브

구분	참여동기 이유: 자율방범대원		참여동기 의향: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78	22.16%	15	14.71%	-.505 (.614)
그렇지 않음	54	15.34%	18	17.65%	
보통	106	30.11%	41	40.20%	
그려함	68	19.32%	15	14.71%	
매우 그려함	46	13.07%	13	12.75%	
합계	352	100.00%	102	10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원의 참여 계기 및 세종시 공무원의 추후 자율 방법 활동 참여 계기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모두 주변의 권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4〉 참여 계기 및 추후 참여 권유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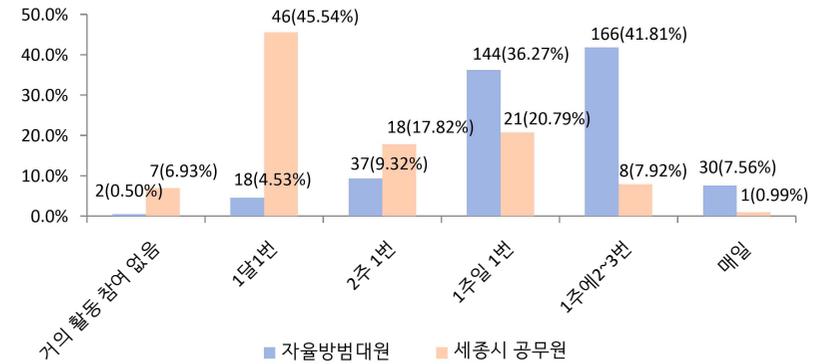


〈표 IV-43〉 자율방범대 활동 참여에 관한 권유 주제

구분	권유 주제: 방범대원		추후 참여 권유 주제: 세종시 공무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가족	9	4.39	11	18.33
주변 방범대원	133	64.88	16	26.67
친구 지인	48	23.41	21	35.00
활동 중인 동호회	13	6.34	5	8.33
경찰·공무원 및 기타	2	0.98	7	11.67
합계	205	100.0	60	100.0

· 자율방범대원의 현재 자율 방법 활동 참여 빈도 및 세종시 공무원의 추후 자율 방법 활동 참여 빈도 의사를 설문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실제 1주일에 2~3번(41.81%) 자율 방법 활동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1달에 1번(45.54%) 참여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5〉 자율방범대 참여 빈도 및 추후 참여 빈도 의사



·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이웃에 대해 권유 의사를 설문한 항목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96명 중 318명(80.30%)이 권유 의사를 밝혔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2명 중 43명(42.15%)이 권유 의사를 밝힘.

- 추가로 이웃 권유 의사에 관한 차이 검증한 결과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이웃에게 권유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자율방범대원 평균 4.08, 세종시 공무원 평균 3.33).

〈표 IV-44〉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이웃 권유 의사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2	0.51	3	2.94	8.227 (.000)***
그렇지 않다	13	3.28	10	9.80	
보통	63	15.91	46	45.10	
그려함	191	48.23	36	35.29	
매우 그려함	127	32.07	7	6.86	
합계	396	100.0	102	100.0	

\*p<.1, \*\*p<.05, \*\*\*p<.01

· 자율 방법 활동 업무에 관한 중복 응답 설문에서는 자율방법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모두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가 중요 자율 방법 활동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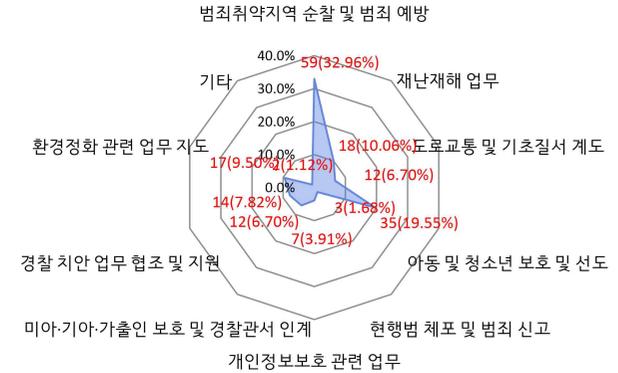
- 자율방법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이 가장 많았으며(23.49%),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19.19%),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15.75%),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10.46%), '재난·재해 업무'(9.00%), '도로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8.80%), '환경정화 관련 업무 지도'(8.01%), '현행법 체포 및 범죄 신고'(3.18%),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1.65%), '기타'(0.46%)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이 가장 많았으며(32.96%),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19.55%), '재난·재해 업무'(10.06%), '환경정화 관련 업무 지도'(9.50%),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7.82%), '도로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6.70%),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3.91%), '현행법 체포 및 범죄 신고'(1.68%), '기타'(1.12%) 순으로 나타났음.

<표 IV-45> 자율 방법 활동 업무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	355	23.49	59	32.96	414	24.50
재난재해 업무	136	9.00	18	10.06	154	9.11
도로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133	8.80	12	6.70	145	8.58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	290	19.19	35	19.55	325	19.23
현행법 체포 및 범죄 신고	48	3.18	3	1.68	51	3.02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25	1.65	7	3.91	32	1.89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158	10.46	12	6.70	170	10.06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	238	15.75	14	7.82	252	14.91
환경정화 관련 업무 지도	121	8.01	17	9.50	138	8.17
기타	7	0.46	2	1.12	9	0.53
합계	1,511	100.0	179	100.0	1,690	100.0

<그림 IV-16> 자율 방법 활동 업무: 세종시 공무원



<그림 IV-17> 자율 방법 활동 업무: 자율방법대원



###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에 관한 운영 현황, 치안 및 범죄위험 그리고 자율 방범 활동의 문제점과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설문을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을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함.

· 세종특별자치시 치안 및 범죄 문제 정도를 설문한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501명 중 26명(5.19%)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98명(39.52%)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97명 중 140명(35.26%)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4명 중 58명(55.77%)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세종시 치안 및 범죄 문제 정도에 관한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집단 간 통계적 차이를 검정한 결과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평균(2.67)이 세종시 공무원 평균(2.39)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6〉 세종시 치안 및 범죄 문제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전혀 심각하지 않음	21	5.29	7	6.73	28	5.59	3.570 (.000)***
별로 심각하지 않음	119	29.97	51	49.04	170	33.93	
보통	233	58.69	44	42.31	277	55.29	
심각함	19	4.79	2	1.92	21	4.19	
매우 심각함	5	1.26	-	0.0	5	1.00	
합계	397	100.0	104	100.0	501	100.0	

\*p<.1, \*\*p<.05, \*\*\*p<.01

· 자율 방범 활동 위험 정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501명 중 244명(48.70%)이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97명 중 194명(48.87%)이,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4명 중 50명(48.07%)이 위험하지 않다고 응답함.

- 한편, 자율 방범 활동에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율방범대원은 55명(13.86%), 세종시 공무원은 18명(17.31%)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간 자율 방범 활동 위험 정도에 관한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7〉 자율 방범 활동 위험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전혀 위험하지 않음	61	15.37	8	7.69	69	13.77	-1.017 (.310)
별로 위험하지 않음	133	33.50	42	40.38	175	34.93	
보통	148	37.28	36	34.62	184	36.73	
위험함	46	11.59	17	16.35	63	12.57	
매우 위험함	9	2.27	1	0.96	10	2.00	
합계	397	100.0	104	100.0	501	1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축 & 인력확보 수준, 자율방범대의 시설 구비 & 장비구축 정도, 자율방범대의 근무 여건 & 복지 수준 정도, 자율방범대와 세종경찰청과의 협업 정도에 관한 인식 내용을 설문함.

·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축 & 인력확보 수준에 관한 설문에서는 총 483명 중 133명(27.54%)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135명(27.95%)이 낮다고 인식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간 차이 검정에서는 세종시 공무원(평균 3.24)이 자율방범대원(평균 2.91)보다 조직구축 및 인력확보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80명 중 122명(32.10%)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3명 중 13명(12.62%)이 조직구축 및 인력확보 정도가 낮다고 인식함.

〈표 IV-48〉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조직구축, 인력확보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36	9.47	1	0.97	37	7.66	-3.058 (.002)**
낮음	86	22.63	12	11.65	98	20.29	
보통	155	40.79	60	58.25	215	44.51	
높음	82	21.58	21	20.39	103	21.33	
매우 높음	21	5.53	9	8.74	30	6.21	
합계	380	100.0	103	100.0	483	1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의 시설 구비 & 장비구축 수준에 관한 설문에서는 총 487명 중 95명(19.50%)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171명(35.11%)이 낮다고 인식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간 차이 검정에서는 세종시 공무원(평균 3.09)이 자율방범대원(평균 2.71)보다 시설 구비 및 장비구축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84명 중 153명(39.84%)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3명 중 18명(17.47%)이 시설 구비 및 장비구축 정도가 낮다고 인식함.

〈표 IV-49〉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시설 구비, 장비구축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50	13.02	3	2.91	53	10.88	-3.435 (.001)***
낮음	103	26.82	15	14.56	118	24.23	
보통	157	40.89	64	62.14	221	45.38	
높음	56	14.58	12	11.65	68	13.96	
매우 높음	18	4.69	9	8.74	27	5.54	
합계	384	100.0	103	100.0	487	1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의 근무 여건 & 복지수준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485명 중 109명(22.48%)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197명(40.62%)이 낮다고 인식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간 차이 검정에서는 세종시 공무원(평균 3.16)이 자율방범대원(평균 2.63)보다 근무 여건 & 복지수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82명 중 179명(46.86%)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3명 중 18명(17.47%)이 시설 구비 및 장비구축 정도가 낮다고 인식함.

〈표 IV-50〉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근무 여건, 복지수준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63	16.49	3	2.91	66	13.61	-4.559 (.000)***
낮음	116	30.37	15	14.56	131	27.01	
보통	122	31.94	57	55.34	179	36.91	
높음	63	16.49	19	18.45	82	16.91	
매우 높음	18	4.71	9	8.74	27	5.57	
합계	382	100.0	103	100.0	485	100.0	

\*p<.1, \*\*p<.05, \*\*\*p<.01

· 자율방범대와 세종경찰청의 협업 정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 479명 중 141명 (29.44%)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100명(20.88%)이 낮다고 인식함.

· 자율방범대원(평균 3.08)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3.21) 간 차이 검정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76명 중 89명(23.67%)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응답자 103명 중 11명(10.68%)이 자율방범대와 세종경찰청의 협업 정도가 낮다고 인식함.

**<표 IV-51>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및 실태: 자율방범대, 세종경찰청 협업 정도**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낮음	30	7.98	1	0.97	31	6.47	-1.206 (.228)
낮음	59	15.69	10	9.71	69	14.41	
보통	172	45.74	66	64.08	238	49.69	
높음	80	21.28	18	17.48	98	20.46	
매우 높음	35	9.31	8	7.77	43	8.98	
합계	376	100.0	103	100.0	479	100.0	

\*p<.1,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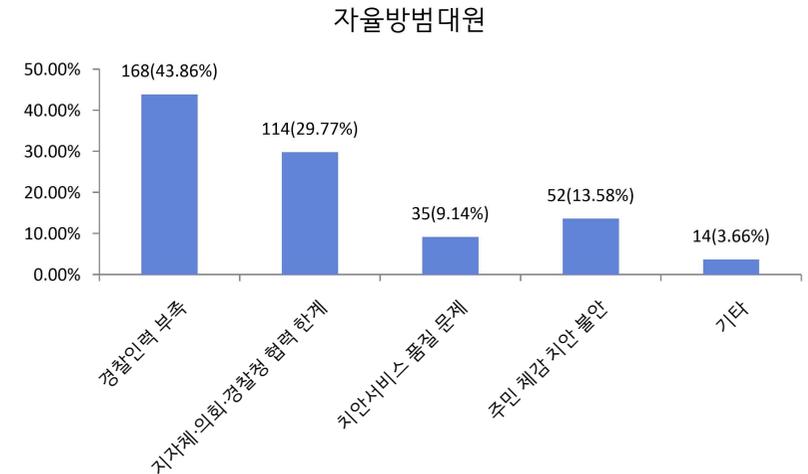
· 자율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에 관한 응답에서는 전체의 경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응답(46.20%)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자체·의회·경찰청 협력 한계(26.08%), 주민 체감 치안 불안(13.14%),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11.09%), 기타 (3.49%)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표 IV- 52> 자율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경찰 인력 부족	168	43.86	57	54.81	225	46.20
지자체·의회·경찰청 협력 한계	114	29.77	13	12.50	127	26.08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	35	9.14	19	18.27	54	11.09
주민 체감 치안 불안	52	13.58	12	11.54	64	13.14
기타	14	3.66	3	2.88	17	3.49
합계	383	100.0	104	100.0	4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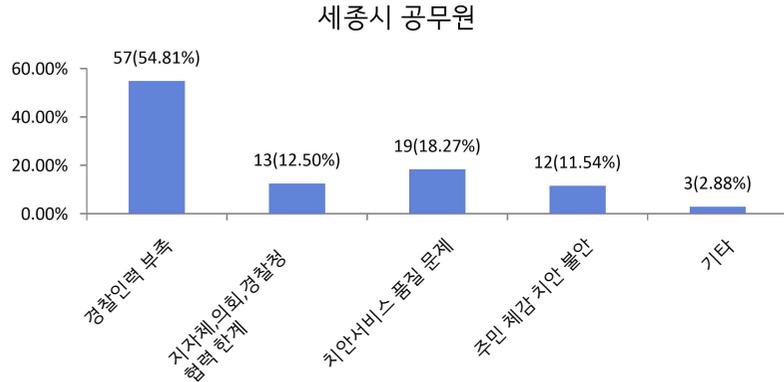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경찰 인력 부족(43.86%)이 가장 큰 자율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자체·의회·경찰청 협력 한계(29.77%), 주민 체감 치안 불안(13.58%),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9.14%), 기타(3.66%) 순으로 응답함.

**<그림 IV-18> 자율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 자율방범대원**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경찰 인력 부족(54.81%)이 가장 큰 자율 방법 활동 참여 저해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18.27%), 주민 체감 치안 불안(11.54%), 지자체·의회·경찰청 협력 한계(12.50%), 기타(2.88%) 순으로 응답함.

〈그림 IV-19〉 자율 방법 활동 참여 저해 요인: 세종시 공무원



· 전체를 대상으로 세종시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는 자율방법대 처우개선(57.14%)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경찰 방법대 지원(17.46%), 주민 협력 및 참여 강화(16.93%), 지역사회 경찰 활동(7.23%), 기타(1.23%) 순으로 응답함.

- 자율방법대원의 경우 자율방법대 처우개선(63.34%)이 가장 많았으며,<sup>18)</sup> 지자체, 경찰 방법대 지원(17.35%), 주민 협력 및 참여 강화(14.10%), 지역사회 경찰 활동(4.34%), 기타(0.87%) 순으로 응답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자율방법대 처우개선(30.19%)이 가장 많았으며, 주민 협력

18) 시민들이 자율방법대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활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자율방법대는 서대문구로부터 분기에 90만원씩 들어오는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활동비 중당이 힘들어서 대원들이 한 달에 1만5000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범죄자 검거에 일조하더라도 추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자율방법대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소다. 자율방법대원은 자율방법대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부담을 느낀 기존 대원들이 자율방법대를 탈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조선일보, 2024.5.2).

및 참여 강화(29.25%), 지역사회 경찰 활동(19.81%), 지자체, 경찰 방법대 지원(17.92%), 기타(2.83%) 순으로 응답함.

〈표 IV-53〉 세종시 자율방법대 활성화 방안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주민 협력 및 참여 강화	65	14.10	31	29.25	96	16.93
자율방법대 처우개선	292	63.34	32	30.19	324	57.14
지자체, 경찰 방법대 지원	80	17.35	19	17.92	99	17.46
지역사회 경찰 활동	20	4.34	21	19.81	41	7.23
기타	4	0.87	3	2.83	7	1.23
합계	461	100.0	106	100.0	567	100.0

· 자율방법대 참여 장애요인에 관한 응답에서는 전체의 경우 복수 응답 중 봉사 정신 부족(48.38%)이 가장 많았으며, 범죄 예방효과 회의감(21.66%),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14.78%), 범죄 두려움(11.94%), 경찰 불신 및 기타(3.24%) 순으로 나타남.

- 두 집단 모두 봉사 정신 부족 > 범죄 예방효과 회의감 >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 > 범죄 두려움 > 경찰 불신 및 기타 순의 응답을 보임.

- 자율방법대원의 응답에서는 봉사 정신 부족(52.44%), 범죄 예방효과 회의감(20.31%),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12.60%), 범죄 두려움(11.83%), 경찰 불신 및 기타(2.8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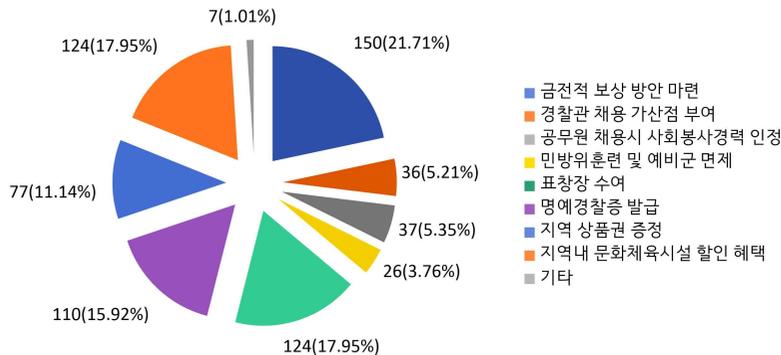
- 세종시 공무원의 응답에서는 봉사 정신 부족(33.33%), 범죄 예방효과 회의감(26.67%),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22.86%), 범죄 두려움(12.38%), 경찰 불신 및 기타(4.76%) 순으로 나타남.

〈표 IV-54〉 자율방범대 참여 장애요인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범죄 두려움	46	11.83	13	12.38	59	11.94
범죄 예방효과 회의감	79	20.31	28	26.67	107	21.66
봉사 정신 부족	204	52.44	35	33.33	239	48.38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	49	12.60	24	22.86	73	14.78
경찰 불신 및 기타	11	2.83	5	4.76	16	3.24
합계	389	100.0	105	100.0	494	100.0

·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에 관한 복수 응답 설문에서는 전체의 경우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21.7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역 내 문화 체육시설 할인 혜택 & 표창장 수여(17.95%), 명예 경찰증 발급(15.92%), 지역 상품권 증정(11.14%), 공무원 채용 시 사회 봉사경력 인정(5.35%), 경찰관 채용 가산점 부여(5.21%),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3.76%), 기타(1.01%) 순으로 응답함.<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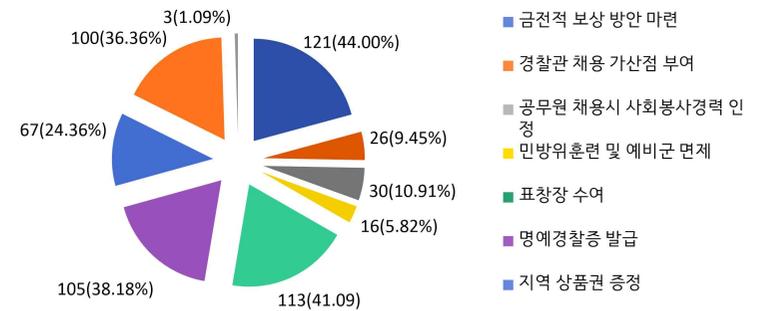
〈그림 IV-20〉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자율방범대원 & 세종시 공무원



19)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 수요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필요하다”며 “자율방범대원에게 실비 보상을 하거나 취업이나 아파트 청약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대원들의 유입을 노력할 수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202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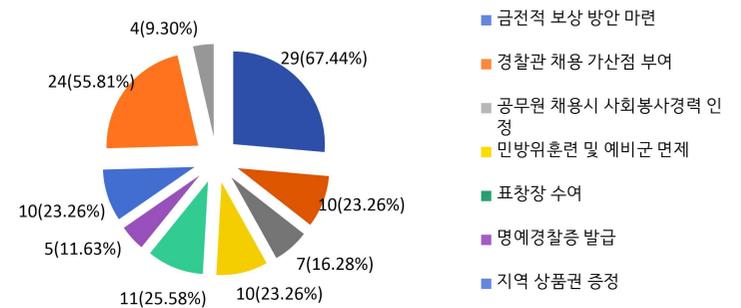
· 자율방범대원의 응답에서는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44.00%), 표창장 수여(41.09%), 명예 경찰증 발급(38.18%), 지역 내 문화 체육시설 할인 혜택(36.36%), 지역 상품권 증정(24.36%), 공무원 채용 시 사회 봉사경력 인정(10.91%), 경찰관 채용 가산점 부여(9.45%),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5.82%), 기타(1.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1〉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자율방범대원



· 세종시 공무원의 응답에서는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67.44%), 지역 내 문화 체육시설 할인 혜택(55.81%), 표창장 수여(25.58%), 경찰관 채용 가산점 부여,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 지역 상품권 증정(23.26%), 공무원 채용 시 사회 봉사경력 인정(16.28%), 명예 경찰증 발급(11.63%), 기타(9.30%)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 세종시 공무원



·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한 경찰청 지원 노력을 질문한 복수 응답 설문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의 경우 각종 장비 보급(32.82%), 방법 활동 포상(28.38%), 교육 및 훈련(20.51%), 지역 범죄정보제공(11.62%), 활동 관리·감독(5.81%), 기타(0.85%) 순의 응답을 보임.

- 자율방법대원의 경우 각종 장비 보급(35.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방법 활동 포상(28.51%), 교육 및 훈련(18.87%), 지역 범죄정보제공(11.53%), 활동 관리·감독(4.82%), 기타(0.84%)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 교육 및 훈련과 방법 활동 포상(2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각종 장비 보급(21.30%), 지역 범죄정보제공(12.04%), 활동 관리·감독(10.19%), 기타(0.93%) 순으로 나타남.

**<표 IV-55>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경찰청 지원 노력**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지역 범죄정보제공	55	11.53	13	12.04	68	11.62
각종 장비 보급	169	35.43	23	21.30	192	32.82
교육 및 훈련	90	18.87	30	27.78	120	20.51
방법 활동 포상	136	28.51	30	27.78	166	28.38
활동 관리·감독	23	4.82	11	10.19	34	5.81
기타	4	0.84	1	0.93	5	0.85
합계	477	100.0	108	100.0	585	100.0

·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시의회, 위원회, 자치단체 지원 노력을 질문한 복수 응답 설문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에서 활동비 지원 강화(46.13%)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지원 조례 강화(19.91%), 보험 가입(18.17%), 포상(14.85%), 기타(0.95%)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의 응답에서는 활동비 지원 강화(48.28%)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지원 조례 강화(18.70%), 보험 가입(17.56%), 포상(15.46%) 순으로 응답함.
- 세종시 공무원의 응답에서는 활동비 지원 강화(35.78%), 지원 조례(25.69%), 보험

가입(21.10%), 포상(11.93%), 기타(5.50%) 순으로 응답함.

**<표 IV-56>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시의회, 위원회, 자치단체 지원 노력**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활동비 지원강화	253	48.28	39	35.78	292	46.13
보험 가입	92	17.56	23	21.10	115	18.17
포상	81	15.46	13	11.93	94	14.85
지원 조례 강화	98	18.70	28	25.69	126	19.91
기타	-	-	6	5.50	6	0.95
합계	524	100.0	109	100.0	633	100.0

·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지원 노력에 관한 복수 응답 설문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의 경우 관심과 격려(54.80%), 참여(22.78%), 찬조금 및 기부금(17.44%), 정보제공(4.45%), 기타(0.53%) 순으로 응답함.

- 자율방법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두 집단 모두 관심과 격려 > 참여 > 찬조금 및 기부금 > 정보제공 > 기타 순으로 응답함.
- 자율방법대원의 경우에는 관심과 격려(55.97%), 참여(22.13%), 찬조금 및 기부금(17.14%), 정보제공(4.56%), 기타(0.22%) 순으로 응답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심과 격려(49.50%), 참여(25.74%), 찬조금 및 기부금(18.81%), 정보제공(3.96%), 기타(1.98%) 순으로 응답함.

〈표 IV-57〉 자율 방법 활동 참여 활성화 지역주민 지원 노력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찬조금 및 기부금	79	17.14	19	18.81	98	17.44
관심과 격려	258	55.97	50	49.50	308	54.80
정보제공	21	4.56	4	3.96	25	4.45
참여	102	22.13	26	25.74	128	22.78
기타	1	0.22	2	1.98	3	0.53
합계	461	100.0	101	100.0	562	100.0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법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관련 설문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법대 및 자율방법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범위의 적절성과 개정되어야 할 사항 및 자율방법대 활동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설문함.

·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을 설문한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 495명 중 151명(30.51%)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194명(39.19%), 그렇지 않다고 응한 응답자가 150명(30.30%)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평균 2.93)과 세종시 공무원(3.42)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자율방법대원의 적절성 평균이 세종시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의 응답에서는 응답자 393명 중 108명(27.48%)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139명(35.37%)이 그렇지 않다고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의 응답에서는 응답자 102명 중 43명(42.16%)이 그렇다고 응답했으

며, 11명(10.78%)이 그렇지 않다고 나타남.

〈표 IV-58〉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음	63	16.03	2	1.96	65	13.13	-3.715 (.000)***
그렇지 않음	76	19.34	9	8.82	85	17.17	
보통	146	37.15	48	47.06	194	39.19	
그려함	43	10.94	30	29.41	73	14.75	
매우 그려함	65	16.54	13	12.75	78	15.76	
합계	393	100.0	102	100.0	495	100.0	

\*p<.1, \*\*p<.05, \*\*\*p<.01

·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필요 사항에 관해 설문한 결과 (중복 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의 경우 시설 안정적 확보(42.05%)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수당 지급 규정 마련(38.87%), 재해보상 규정 마련(12.72%),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5.30%), 기타(1.06%)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은 시설 안정적 확보(43.23%), 수당 지급 규정 마련(41.92%), 재해보상 규정 마련(8.95%),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5.68%), 기타(0.22%)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시설 안정적 확보(37.04%), 재해보상 규정 마련(28.70%), 수당 지급 규정 마련(25.93%), 기타(4.63%),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3.70%) 순으로 나타남.

〈표 IV-5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 필요 사항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26	5.68	4	3.70	30	5.30
시설 안정적 확보	198	43.23	40	37.04	238	42.05
수당 지급 규정 마련	192	41.92	28	25.93	220	38.87
재해보상 규정 마련	41	8.95	31	28.70	72	12.72
기타	1	0.22	5	4.63	6	1.06
합계	458	100.0	108	100.0	566	100.0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에 관한 복수 응답 설문 결과에서는 전체 응답자 499명 중 150명(30.66%)이 그러함으로 답하였으며, 보통이 205명(41.08%), 144명(28.86%)이 그렇지 않다고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평균 2.94)과 세종시 공무원(평균 3.35)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평균이 세종시 공무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임.

- 자율방범대원은 응답자 395명 중 114명(28.86%)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37명(34.68%)이 그렇지 않다고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응답자 104명 중 36명(34.61%)이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7명(6.73%)이 그렇지 않다고 나타남.

〈표 IV-60〉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절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매우 그렇지 않음	64	16.20	1	0.96	65	13.03	-3.165 (.002)**
그렇지 않음	73	18.48	6	5.77	79	15.83	
보통	144	36.46	61	58.65	205	41.08	
그려함	52	13.16	28	26.92	80	16.03	
매우 그려함	62	15.70	8	7.69	70	14.03	
합계	395	100.0	104	100.0	499	100.0	

\*p<.1, \*\*p<.05, \*\*\*p<.01

· 청장년층(20~40대)의 자율 방범 활동을 기피하는 이유에 관한 설문을 질문한 복수 응답 결과에서는 전체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45.60%)가 가장 많았으며, 성과 혹은 실효성 없음(19.93%), 참여 방법을 몰라서(12.93%), 은퇴자 및 친목 활동이라는 인식(11.49%), 기타(7.36%), 주민과의 마찰(2.69%)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48.88%), 성과 혹은 실효성 없음(20.31%), 참여 방법을 몰라서(13.17%), 은퇴자 및 친목 활동이라는 인식(8.93%), 기타(6.47%), 주민과의 마찰(2.23%)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32.11%), 은퇴자 및 친목 활동이라는 인식(22.02%), 성과 혹은 실효성 없음(18.35%), 참여 방법을 몰라서(11.93%), 기타(11.01%), 주민과의 마찰(4.59%) 순으로 나타남.

〈표 IV-61〉 청장년층 자율 방법 활동 기피 이유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참여 방법을 몰라서	59	13.17	13	11.93	72	12.93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	219	48.88	35	32.11	254	45.60
성과 혹은 실효성 없음	91	20.31	20	18.35	111	19.93
주민과의 마찰	10	2.23	5	4.59	15	2.69
은퇴자 및 침묵 활동이라는 인식	40	8.93	24	22.02	64	11.49
기타	29	6.47	12	11.01	41	7.36
총합	448	100.0	109	100.0	557	100.0

〈표 IV-62〉 청장년층 자율 방법 활동 유인책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참여 인식 전환과 홍보 노력 강화	96	20.96	29	27.36	125	22.16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음	195	42.58	44	41.51	239	42.38
실질적 권한 부여 및 강화	44	9.61	6	5.66	50	8.87
근무 환경 개선	90	19.65	8	7.55	98	17.38
공공 봉사과 직장 내 승진 연계	26	5.68	16	15.09	42	7.45
기타	7	1.53	3	2.83	10	1.77
합계	458	100.0	106	100.0	564	100.0

· 자율방법대 운영에 있어 중요 요인을 질문한 복수 응답 결과에서는 전체의 경우 경제지원강화(32.40%), 권한 강화(21.37%), 주민 관심(17.86%), 인원 확대(9.63%),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9.46%), 방법대(원) 열의(9.28%)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은 경제지원강화(3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한 강화(21.65%), 주민 관심(15.58%), 인원 확대(9.52%), 방법대(원) 열의(9.09%),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8.87%)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주민 관심(27.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한 강화와 경제 지원 강화(20.18%),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11.93%), 인원 확대와 방법대(원) 열의 순(10.09%)으로 나타남.

〈표 IV-63〉 자율방법대 운영 중요 요인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인원 확대	44	9.52	11	10.09	55	9.63
권한 강화	100	21.65	22	20.18	122	21.37
경제지원강화	163	35.28	22	20.18	185	32.40
방법대(원) 열의	42	9.09	11	10.09	53	9.28
주민 관심	72	15.58	30	27.52	102	17.86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	41	8.87	13	11.93	54	9.46
합계	462	100.0	109	100.0	571	100.0

· 자율방법대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 조건을 설문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경우 지역사회 봉사 정신(53.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경제적·시간적 여유(20.98%), 범죄(예방) 관련 지식(8.68%), 주민친화력(8.32%), 동료와의 협업·협동 정신(7.59%), 기타(0.54%)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은 지역사회 봉사 정신(56.15%), 경제적·시간적 여유(17.90%), 범죄(예방) 관련 지식(9.17%), 주민친화력(8.50%), 동료와의 협업·협동 정신(7.61%), 기타(0.67%)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지역사회 봉사 정신(44.34%), 경제적·시간적 여유(33.96%), 주민 친화력과 동료와의 협업·협동 정신(7.55%), 범죄(예방) 관련 지식(6.60%) 순으로 나타남.

〈표 IV-64〉 자율방범대 활성화 중요 조건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주민친화력	38	8.50	8	7.55	46	8.32
지역사회 봉사 정신	251	56.15	47	44.34	298	53.89
경제적, 시간적 여유	80	17.90	36	33.96	116	20.98
동료와의 협업, 협동 정신	34	7.61	8	7.55	42	7.59
범죄(예방) 관련 지식	41	9.17	7	6.60	48	8.68
기타	3	0.67	-	-	3	0.54
합계	447	100.0	106	100.0	553	100.0

· 자율방범대원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 지원 주체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46.08%)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지원(22.75%), 중앙정부 지원(20.84%), 지역주민 지원(9.75%), 기타(0.57%)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48.92%), 중앙정부 지원(23.02%), 경찰 지원(20.14%), 지역주민 지원(7.43%), 기타(0.48%)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34.91%), 경찰 지원(33.02%), 지역주민 지원(18.87%), 중앙정부 지원(12.26%), 기타(0.94%) 순으로 나타남.

〈표 IV-65〉 자율 방법 활동 활성화 중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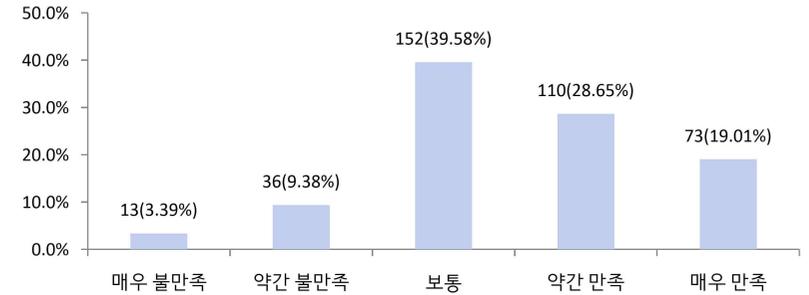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경찰 지원	84	20.14	35	33.02	119	22.75
지방정부 지원	204	48.92	37	34.91	241	46.08
지역주민 지원	31	7.43	20	18.87	51	9.75
중앙정부 지원	96	23.02	13	12.26	109	20.84
기타	2	0.48	1	0.94	3	0.57
합계	417	100.0	106	100.0	523	100.0

###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율 방법 활동 교육 관련 문항과 추후 교육훈련에 관한 추가적 사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과 구성 시 주요 사항에 관한 문항을 설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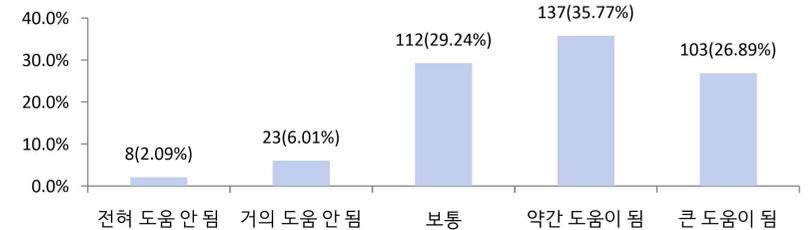
·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 방법 활동 교육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384명 중 183명(47.66%)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9명(12.77%)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나타남.

〈그림 IV-23〉 자율 방법 활동 교육 적절성: 자율방범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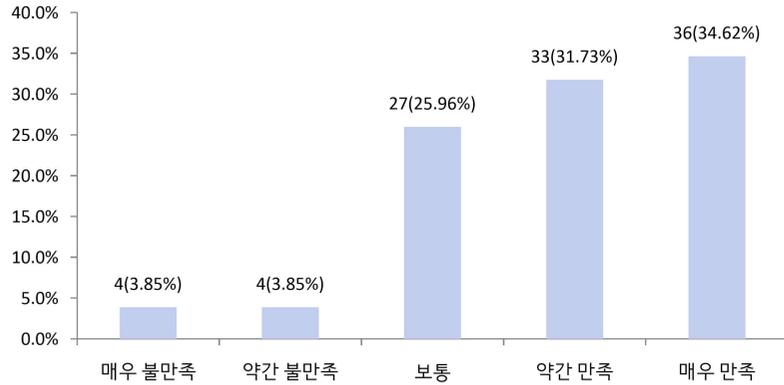
·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이 도움이 된 정도를 설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383명 중 240명(62.66%)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1명(8.10%)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나타남.

〈그림 IV-24〉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 도움 정도: 자율방범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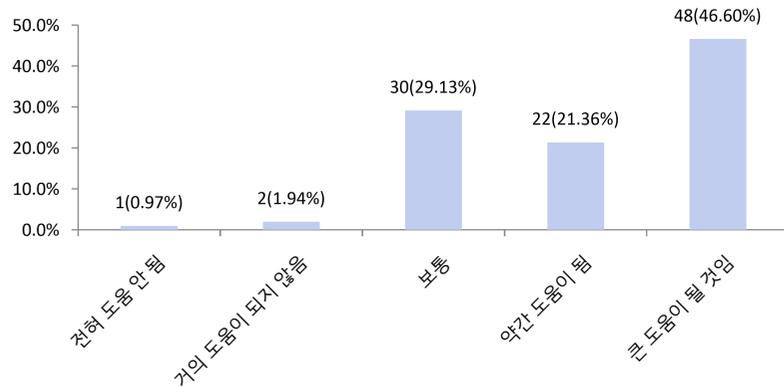
·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 방법 활동 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104명 중 69명(66.35%)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명(7.70%)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남.

<그림 IV-25> 자율 방법 활동 교육 필요성: 세종시 공무원



·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응답자 103명 중 70명(67.96%)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3명(2.91%)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함.

<그림 IV-26> 자율 방법 활동에 관한 교육 도움 예상 정도: 세종시 공무원



· 자율방법대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38.67%)이 가장 많았으며, 자율방법대 관련 법과 규정(19.97%), 범죄 예방 관련 지식(18.56%), 안전 장비 사용 방법(9.49%), 호신술(6.66%), 대화법(6.52%), 기타(0.14%)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법대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37.14%), 자율방법대 관련 법과 규정(19.93%), 범죄 예방 관련 지식(19.25%), 안전 장비 사용 방법(9.71%), 대화법(6.98%), 호신술(6.81%), 기타(0.17%)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46.22%), 자율방법대 관련 법과 규정(20.17%), 범죄 예방 관련 지식(15.13%), 안전 장비 사용 방법(8.40%), 호신술(5.88%), 대화법(4.20%) 순으로 나타남.

<표 IV-66> 교육훈련 추가 내용

구분	자율방법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안전 장비 사용 방법	57	9.71	10	8.40	67	9.49
자율방법대 관련 법과 규정	117	19.93	24	20.17	141	19.97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218	37.14	55	46.22	273	38.67
호신술	40	6.81	7	5.88	47	6.66
범죄 예방 관련 지식	113	19.25	18	15.13	131	18.56
대화법	41	6.98	5	4.20	46	6.52
기타	1	0.17	-	-	1	0.14
합계	587	100.0	119	100.0	706	100.0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의회, 세종경찰청, 자율방법대(혹은 민간 단체) 간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관한 설문 결과에서는 전체의 경우 응답자 468명 중 115명(24.57%)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 303명(64.74%), 낮다는 응답은 50명(10.68%)으로 나타남.

·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관한 자율방법대원(평균 3.13)과 세종시 공무원(3.33) 간 평균의 차이는 자율방법대원의 평균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은 응답자 367명 중 81명(22.07%)이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관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42명(11.45%)이 낮다고 나타남.

- 세종시 공무원은 응답자 101명 중 34명(33.56%)이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관하여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8명(7.92%)이 낮다고 나타남.

〈표 IV-67〉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t-value (p)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매우 낮음	3	0.82	5	4.95	8	1.71	-2.410 (.016)*
낮음	39	10.63	3	2.97	42	8.97	
보통	244	66.49	59	58.42	303	64.74	
높음	69	18.80	22	21.78	91	19.44	
매우 높음	12	3.27	12	11.88	24	5.13	
합계	367	100.0	101	100.0	468	100.0	

\*p<.1, \*\*p<.05, \*\*\*p<.01

· 주민 안전 증대를 위한 기초 간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고려될 주요 쟁점(사안)에 관한 복수 응답 질문에서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응답의 비율(40.04%)이 가장 높았으며,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32.57%),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17.43%),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8.62%), 기타(0.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원과 세종시 공무원 두 집단 모두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 등의 순으로 응답함.

〈표 IV-68〉 치안 거버넌스 구성 주요 사항

구분	자율방범대원		세종시 공무원		합계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빈도(명)	퍼센트 (%)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	145	34.77	25	23.81	170	32.57
치안 거버넌스 구축	164	39.33	45	42.86	209	40.04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73	17.51	18	17.14	91	17.43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	31	7.43	14	13.33	45	8.62
각종 활동비 지원 보조금	1	0.24	-	-	1	0.19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 각종 장비 보급	1	0.24	-	-	1	0.19
활동비 지원강화, 각종 장비 보급	1	0.24	-	-	1	0.19
기타	1	0.24	3	2.86	4	0.77
합계	417	100.0	105	100.0	522	100.0

## 제6절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한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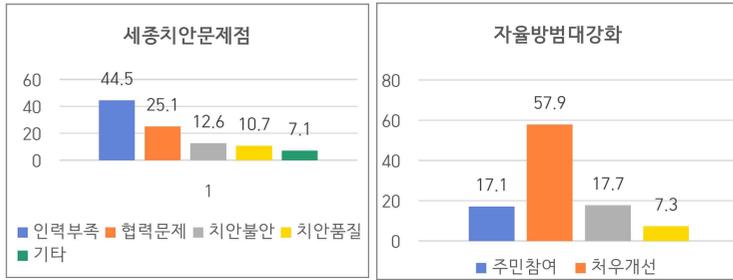
### 1. 주민의 자율방범대 참여

#### 1) 치안 인식과 자율방범대

· 세종시의 치안 문제점은 경찰 인력 부족 44.5%, 지자체, 의회, 경찰청과의 협력 문제 25.1%, 주민 체감 치안 불안 12.6%,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 10.7%, 기타 7.1%로 나타남. 따라서 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57.9%, 지자체와 경찰의 지원 17.7%, 주민 협력 및 참여 강화 17.1%,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강화 7.3%로 나타남. 따라서 자율방범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의 보상 등 처우개선이 우선 과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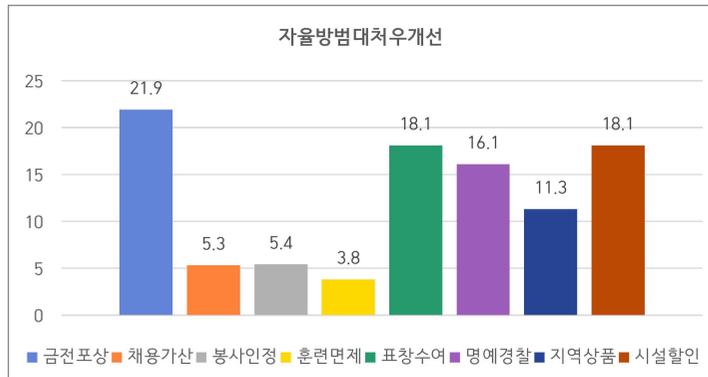
<그림 IV-27> 치안 인식과 자율방범대



2) 자율방범대 활성화

· 자율방범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전적 포상마련 21.9%, 경찰채용 시험의 가산점 부여 5.3%, 공무원 채용 시 사회봉사경력으로 인정 5.4%, 민방위 및 예비군 면제 3.8%, 우수 대원에 표창장 수여 18.1%, 대원에게 명예경찰증 발급 16.1%, 지역상품권 증정 11.3%, 지역 내 문화 및 체육시설 할인 혜택 18.1%로 나타남. 따라 자율방범대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전적 보상과 혜택이 수반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 있음

<그림 IV-28>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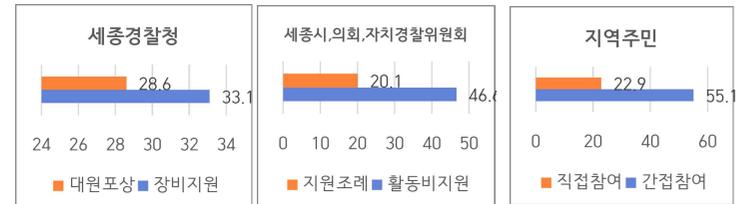
3) 자율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

·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종경찰청, 세종시·세종시의회·자치경찰위원회, 지역주민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세종경찰청의 지원으로는 지역의 범죄정보제공 11.7%, 각종 장비 보급 33.1%, 자율 방법 교육 및 훈련 20.7%, 자율방범대에 대한 포상 28.6%, 자율 방법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5.9% 수준으로 나타남. 세종시·세종시의회·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으로는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강화 46.6%, 보험 가입 18.3%, 대원포상 15.0%, 지원 조례 강화 20.1%로 나타남. 지역주민차원에서는 찬조 및 기부금 17.5%, 자율 방법 활동 간접참여(관심·격려) 55.1%, 정보제공 4.5%, 직접참여(활동) 22.9%로 나타남.

· 따라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세종경찰청은 자율 방법 장비의 보급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활동비 지원, 지원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은 직·간접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9> 자율방범대 참여 지원



2. 자율방범대 입법화 방안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비지원 범위

·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4.27.시행) 로 인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법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법 제14조 제1항의 “경비 등의 지

원”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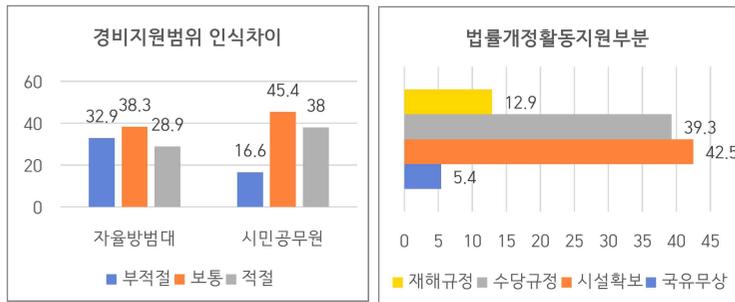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체 응답자 중 경비지원 범위가 적절하지 않음 30.3%이고, 보통 39.2%, 적절함 30.5% 수준으로 나타남. 공무원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38.0%로 높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32.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신설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5.4%,<sup>20)</sup> 자율 방법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 42.5%, 수당 지급 규정 마련 39.3, 재해보상 규정 마련 12.9%으로 나타남.

·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한 방안으로 자율 방법 시설 마련, 수당 지급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IV-30> 법률 개정 범위(1)**



20) 대부분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불법 건축물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별로 방법 초소와 사무실 등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조례도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은 간식비 등을 명목으로 한 몇십만 원이 전부인 경우도 많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경비 지원 범위**

·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경비 등의 지원)(2023.4.27.시행)에는 자율방범대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 자율 방법 활동을 증진하고, 경비지원 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등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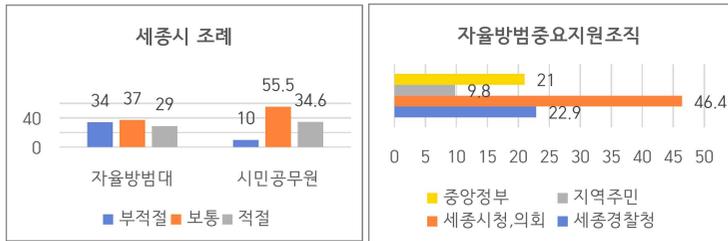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  
 3.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전체 응답자 중 경비지원 범위가 적절하지 않음 28.8%, 보통 41.1%, 적절함 28.0% 수준으로 나타남. 대체로 공무원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34.6% 높으나, 자율방범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34.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의 자율방범대지원에 대해 어느 조직의 지원이 중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 세종경찰청의 지원 22.9%, 세종시청 및 의회의 지원 46.3%, 지역주민의 지원 9.8%, 중앙정부의 지원 21.0%로 나타남.

· 따라서 자율방범대 입법화, 조례화 제정에서는 자율 방법 장비 및 시설 확보, 수당, 보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세종시나 의회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1> 법률 개정 범위(2)



<그림 IV-32> 치안 거버넌스 구축 수준



### 3.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1)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정도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종시와 의회, 세종경찰청, 자율방범대 간의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 있음.
-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대해 낮은 편 10.7%로 나타났고 보통 64.7%, 높은 편 24.5% 수준으로 나타났음.
- 이에 대해 대체로 공무원은 구축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37.4% 높으나, 자율방범대원은 구축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21.0%로 나타나고 높지 않음. 전체적으로 세종시와 의회, 경찰청, 자율방범대 간의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치안 현장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세종시 치안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 조직의 노력과 협력, 공동방안 마련이 절실히 보임.

#### 2) 거버넌스 협력 가능성 낮은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협력체계 낮은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치안 거버넌스 협력 가능성이 낮은 이유: 경제적 이유, 각 기관 간 유대관계의 미형성, 각 기관 간의 갑을 관계 형성, 경제적 지원 부족, 경찰 관계자의 빈번한 교체,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관심점 없는 칸막이 행정, 대원의 연령이 증가함. 봉사에 대한 대가, 서비스 정신부족, 소통 부족, 실효성 부족, 예산 및 인력 부족, 참여 부족, 청년층 취직 가산점 부여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3) 거버넌스 구축의 고려 사항

- 세종시 주민 안전 증대를 위한 기초 간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응답자 중 시민참여형 공동 치안 네트워크 강화 33.0%이고, 민·관·경 치안 거버넌스 구축 40.6%,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17.7%, 맞춤형 치안수요 발굴 8.7%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세종시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임.

〈그림 IV-33〉 치안 거버넌스 구축 고려 사항



· 세종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의견: 각종 장비 보급, 실질적 권한 부여, 주민수요조사 플랫폼 마련, 교육,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 신속한 소통채널(문자, 카카오톡, SNS등), 민간단체와 협력과 사이버 범죄예방 지원, 방법대와 지구대 간 정보 공유, 방법대원 의견수렴, 보조금 지원 확대, 복장개선 및 장비 지급, 노후 된 차량 수리, 연합대와 지대 간 소통과 화합 필요, 자율적 참여 유도, 방법대 가입 조건 강화, 청년층 참여 방안 강구, 정보 공유와 소통(방법대, 지구대, 동사무소), 정부예산 지원 법령 명시(초소, 차량, 의류 등 경찰청에서 지원), 자율방법대 권한 강화(반려견, 금연 구역, 단속권, 교통 수신호, 청소년 지도권 법률로 명시, 교육강화), 참여수당 지원, 충분한 보상과 경제적 지원 강화,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경험 공유, 활동비 충분히 제공.

####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1) 분석 종합

###### (1) 치안 여건 종합

· 광역시·도의 자율방법대 조직은 점차 증가하는 대원수는 점차 감소함. 세종시의 범인 검거실적 및 신고 건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율방법대의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음.

· 자율방법대 조직과 인원은 감소하나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검거는 늘어났고,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자율방법대의 경찰과의 협력은 치안 환경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자율방법대 활동이 단순히 범죄 예방이라는 소극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경찰과의 공동활동, 합동 검거, 범죄 신고 등 적극적 활동으로 진행됨.

##### (2) DEA 효율성 종합

· 자율방법대의 효율성은 광역시 평균은 58%, 광역도 평균은 35%, 광역시는 2020년 50%, 2021년 54%, 2022년 69%로 점차적으로 증가함. 결국, 자율방법대 효율성은 증가하며, 조직, 인력을 높일 필요 있음.

· 광역도는 2020년 41%, 2021년 33%, 2022년 39%로 감소했다가 증가. 자율방법대의 효율성은 높지 않지만, 시간에 따른 일관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음.

· 세종시의 자율방법대 효율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값이 높은 지역인 부산, 제도 정도의 효율성을 가질려면 범죄 신고 및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또한, 조직 증가 및 대원들의 참여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3) 주민 인식 조사 종합

· 세종시의 치안 인식 문제점으로 경찰 인력 부족, 경찰청과의 협력 문제 등이 있으나, 향후 자율방법대 강화를 위해 대원의 보상 및 처우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율방법대 처우개선 방안으로 금전적 보상과 혜택이 중요하며, 상장 수여, 문화 및 체육시설 할인 등도 필요함.

· 자율방법대의 참여 활성화 장치로는 각종 장비 보급, 포상,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하며, 조례제정, 주민들의 직접, 간접적인 참여 등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의회,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비 지원 등이 필요함.

· 자율방범대의 입법화 방안으로 현재의 경비지원 범위가 다소 약하며 자율 방법 시설의 안정적 확보, 수당 지급 등 보상 규정도 마련도 필요함. 세종시의 경비지원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경찰청 지원, 중앙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 의회, 경찰청,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 거버넌스 협력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지원 부족, 서비스 및 소통 부족, 참여, 예산 부족 등임. 향후 민·관·경의 치안 거버넌스 구축, 공동 치안 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함.

## V. 세종특별자치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제1절 연구의 시사점

#### 1. 주민의 치안 참여

· 주민참여가 자치와 함께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협치 (governnance)를 고려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나가는 것을 의미.

· 주민참여 유형은 주민참여 활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함께 일함으로써 지지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방식.



· 주민참여는 정부와 협력 여부, 주민들과의 협력 활동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4개 부분을 나눌 수 있음.

· 바람직한 방식은 정부와 협력이 적극적이고 주민과의 집단적 활동이 가능한 시민순찰대에서 봉사하거나 경찰과 협조를 통한 범죄를 예방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적합함.

		주민들과의 협력 활동	
		개별적 활동	집단적 활동
정부와 협력 여부	비협력 (소극적)	집에 경보기 설치 집 밖에 보조등을 달	시민자율 순찰대를 조직하여 지역 순찰 로비그림을 형성
	협력 (적극적)	자원경찰로 근무 경찰관과 함께 순찰	경찰에 의해 조직된 시민순찰대 서 봉사함 경찰과의 협조로 범죄예방단체 조직

## 2. 자율방범대 운영

- 2019년 6월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행정수도 치안 기능 강화.
- 세종지역의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비해 경찰인력의 부족, 주민의 체감치안 불안.
- 지자체와의 협력에 한계, 치안서비스 품질 문제, 각종 범죄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유인호의원)- 세종시의 중요범죄 112신고건 수(2021, 5만3천->2023, 5만8천 증가), 북부권보다 남부, 신도심에 증가.
- 예방 중심 경찰 활동, 확고한 법질서 확립, 현장 중심 치안 행정 혁신을 위해 자율방범 활동 강화, 지역 안전에 대한 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율방범 활동,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 필요,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근무 여건, 복리후생, 초소 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3. 자율방범대 입법화

- 자율방범 관련 법률 검토와 조례 개정안 제시.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법률 제정으로 법정단체는 되었지만,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안을 통한 개정이 필요함.
- 현행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
- 법률개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을 대부·사용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법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포함)

- 법률개정 전의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 거점시설에 대한 지원 대안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통하여 사용 가능한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4.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 세종형 치안거버넌스 모델: 협의와 참여, 자율방범대 운영업무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 세종경찰청과의 협력 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세종시 경찰의 일방적인 치안이 아니라 시민단체, 안전 관련 기관, 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치안 공동생산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경찰-노인공동체 치안활성화, 경찰-대학공동체 치안 활성화, 경찰-병원-소방 신속 대응 공조 체제 구축, 자율방범대-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협력강화,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강화 등.

제2절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표 V-1〉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안)

구성	현행	개정 및 신설
경비 및 행정 지원	<p>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li> <li>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 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li> <li>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li> </ol> <p>② 방범대 및 연합회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③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p>	<p>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의 지역안정 협조요청에 따른 활동 수당 지원</li> <li>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훈련 수당 지원(대면교육 시) 및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li> <li>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지정하는 1인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별첨에 따른다.</li> </ol>
지원 제한		<p>(지원제한)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 경고 1회</li> <li>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 미실시 : 경고 1회</li> <li>1년간 경고 횟수가 2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1 감액(1회)</li> <li>1년간 경고 횟수가 3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2 감액(2회)</li> <li>1년간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 전액감액(3회)</li> <li>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 월 지원금의 3분의 2 감액(2회)</li> <li>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월 지원금 전액 감액(3회)</li> </ol>

근무수칙		<p>(근무수칙) 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무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li> <li>근무시간 : 21:00~익일 01:00</li> <li>근무 중 순찰복 착용</li> <li>순찰장비 및 차량 관리 철저</li> <li>1일 근무인원 4명 이상 배치</li> <li>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금지</li> <li>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li> </ol> <p>② 자율방범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초소근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대장은 초소상황유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p>
장학금 지원		<p>(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원으로서 2년 이상을 근무한 자의 자녀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50%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li> <li>「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재학 중인 사람</li> </ol> <p>② 장학금 지원은 제1항 대원 1명에 대하여 1회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li> <li>의회, 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표창 이상의 상을 수여한 대원의 자녀</li> </ol>
환수		<p>(환수) 시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협력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sup>21)</sup>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 의회, 교육청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치안협력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시, 의회, 경찰청, 자율방범대, 교육청이 참여하는 치안협력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협력회의를 진행한다. ② 치안협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첨에 따른다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방범대를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sup>22)</sup>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원과 방범대를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세종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치안을 위하여 공헌 바가 높은 방범대원은 그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자율 방범 활동 참여 저해 요인에 관한 응답에서는 전체의 경우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응답(46.20%), 지자체·의회·경찰청 협력 한계(26.08%), 주민 체감 치안 불안(13.14%), 치안 서비스 품질 문제(11.09%), 기타(3.49%) 순으로 설문에 응답함.
- 청장년층(20~40대)의 자율 방범 활동을 기피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서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 (45.60%), 성과 혹은 실효성 없음(19.93%), 참여 방법을 몰라서(12.93%), 은퇴자 및 친목 활동이라는 인식(11.49%), 기타(7.36%), 주민과의 마찰(2.69%) 순으로 나타남.
-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중요 요인**을 질문한 복수 응답 결과에서는 전체의 경우 **경제지원강화** (32.40%), **권한 강화**(21.37%), **주민 관심**(17.86%), **인원 확대**(9.63%),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9.46%), **방범대(원) 열의**(9.28%) 순으로 응답함.
- **자율방범대와 세종경찰청의 협업 정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경우 응답자 376명 중 89명(23.67%)이 **낮다**고 인식
- **자율방범대원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 지원 주체**에 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경우 **지방정부 지원** (46.08%)이 가장 많았으며, **경찰 지원**(22.75%), **중앙정부 지원**(20.84%), **지역 주민 지원**(9.75%), **기**

\*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10.11.]. (일부개정) 2024-10-11 조례 제8190호 제17조(교육 및 훈련)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수당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서에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에 임한 1일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는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1일 최대 8시간까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단가계산은 10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며, 시간계산은 매월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 이하를 버리고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1.]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2871호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07.07.](전부개정) 2023.07.07. 조례 제3341호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0.13.](전부개정) 2023.10.13 조례 제1246호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 **범죄, 실종, 가출인 수색 등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수당**

\* 울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2152호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5.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4.03.12.](전부개정) 2024.03.12 조례 제2490호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고령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타(0.57%) 순으로 나타남.

22) · **자율 방범 활동 참여 활성화** 요인에 관한 복수 응답 설문에서는 전체의 경우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21.71%), 지역 내 문화 체육시설 할인 혜택 & 표창장 수여(17.95%), 명예 경찰증 발급(15.92%), 지역 상품권 증정(11.14%), 공무원 채용 시 사회 봉사경력 인정(5.35%), 경찰관 채용 가산점 부여(5.21%),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3.76%), 기타(1.01%) 순으로 응답함.

**6.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

※ 진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시행 2023.11.06](전부개정) 2023.11.06 조례 제1930호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비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범죄 예방 및 방범 활동 교육·훈련 경비**

※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일부개정) 2023.12.26 조례 제2026호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4.03.22](전부개정) 2024.03.22 조례 제1508호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 및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1.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2.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 3.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임실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4.12.31]( 제정) 2014.12.31. 조례 제2113호  
 제8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5.10.15]( 제정) 2015.10.15. 조례 제2165호  
 제8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수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직무경진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육훈련 경비 및 활동수당(공식적인 공공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별첨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며 연합회에서 지정하는 1인에 대해서는 1일 최대 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정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해외사례인 독일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및 훈련) 제2항의 2 기본교육 12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치안협력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 공무원(2인), 경찰(2인), 의회의원(2명: 교육, 행정), 교육청(2인), 자율방범대(2인: 회장, 부회장), 전문가(2인: 연구원, 교수 등) 총 12인 정도로 구성함.

**<표 V-2> 일본 이치카와시 방범만들기 위원회 구성**

지역위원(11명)	지역주민대표(3명) : 자치회회장, 자치회부회장(2명)
	보호자대표(3명) : 초등학교 PTA회장, 부회장(2명)
	학교대표(3명) :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중학교 교장
	상업관계단체대표(2명)
행정위원(7명)	경찰(1명) : 생활안전과장
	시공무원(4명) : 방범대책과 과장 및 과원
	교육위원회(2명)
전문가(3명)	연구소 근무

자료 : 길종백(2014: 64)

**제3절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 단기적인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장기적인 치안 거버넌스 구축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회,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방안.

·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자전거순찰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자운전자회, 의용소방대 등 안전과 관련한 실제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플랫폼(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새마을회, 청소년 육성회 등)을 구성하고 치안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과의 연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 경찰 활동(주민참여)에 기반한 공동 생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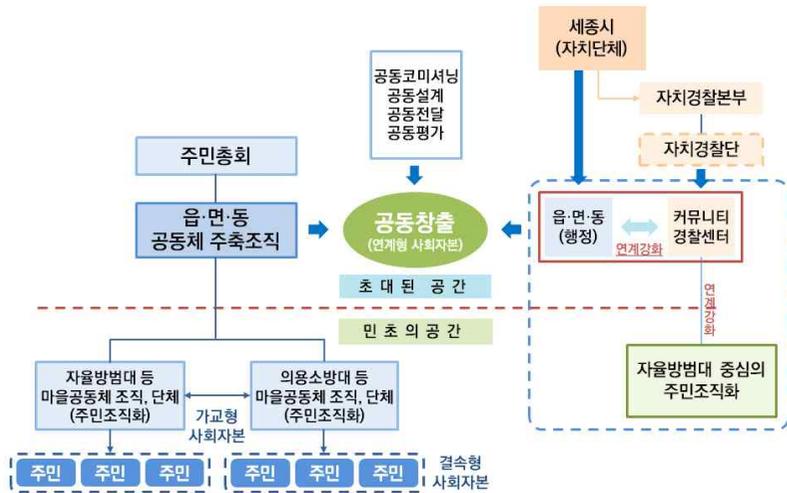
23) · 주민 안전 증대를 위한 기초 간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고려될 주요 쟁점(사안)에 관한 복수 응답 질문에서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40.04%),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32.57%),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17.43%),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8.62%), 기타(0.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의견: 각종 장비 보급, 실질적 권한 부여, 주민수요조사 플랫폼 마련, 교육,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 신속한 소통채널(문자, 카카오톡, SNS등), 민간단체와 협력과 사 이버 범죄예방 지원, 방범대와 지구대 간 정보 공유, 방범대원 의견수렴, 보조금 지원 확대, 복장개선 및 장비 지급, 노후된 차량 수리, 연합대와 지대 간 소통과 화합 필요, 자율적 참여 유도, 방범대 가입 조건 강화, 청년층 참여 방안 강구, 정보공유와 소통(방범대, 지구대, 동사무소), 정부예산 지원 법령 명시(초소, 차량, 의류 등 경찰청에서 지원), 자율방범대 권한 강화(반려견, 금연구역, 단속권, 교통 수신호, 청소년 지도권 법률로 명시, 교육강화), 참여수당 지원, 충분한 보상과 경제적 지원 강화,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경험 공유, 활동비 충분히 제공.

· 현재 방법초소의 안정적인 시설확보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사항을 검토하고 다기관  
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센터 및 치안센터에 자율방법 초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되어  
야 함.<sup>24)</sup>

·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면 기본적으로 실질적  
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참여자인 지역주민, 치안 협  
력 단체, 경찰, 시, 의회, 교육청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범죄예방 중심의 치안 거  
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타 사항으로 부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시간 치안 정보의 제  
공, 자율방법대의 활동 확인, 양방향 소통 확인, 자율방법대의 활동을 확인한 지역주  
민들은 범죄 두려움을 감소의 효과를 나타내는 세이프세종 앱(가칭)의 개발의 필요성  
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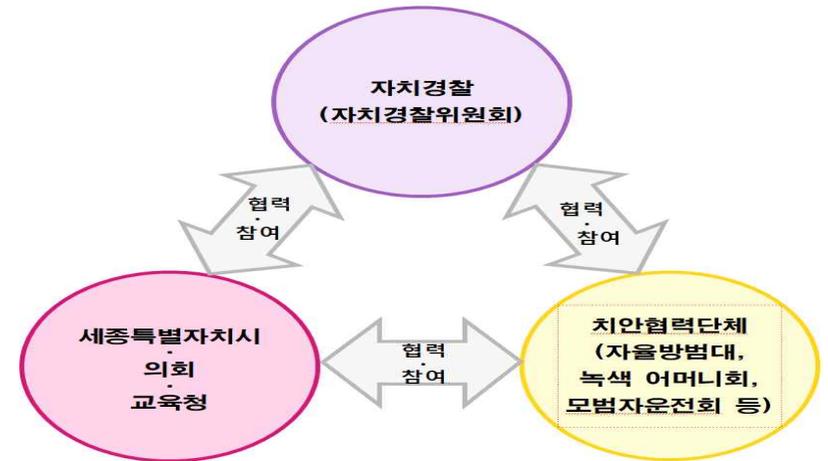
<그림 V-1> 세종형 자치경찰계 치안 거버넌스



자료: 김흥주 외(2024)

24) 2018년 치안센터에 대한 타용도 활용방안을 위한 검토보고서에서 자율방법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이 불가하는 입장임. 그러나 법제처는 주민자치회를 공공단체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자율방법대도 공공단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김흥주, 2024: 204). 만약 법  
제처에서 자율방법대를 공공단체로 유권해석 한다면 주민센터의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됨. 따라서 법  
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자율방법대가 공공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V-2>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모형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경찰청. (2023). 경찰백서.
- 이승중·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 박영사.
- 김흥주·홍성표·장일식. (2024). 자치경찰이원화에 대비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 연구. 정책연구 2024-34.

### 2. 학술논문

- 강필영. (2021). 자율방범대원 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8(1): 1-19.
- 길종백. (2014). 지역치안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일본의 방법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53-73.
- 김경태. (2006).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1): 159-184.
- 김미연·김인설. (2018). 마을지 만들기 사업의 공동체적 경험과 의미, 그리고 한계: 주민참여 수준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1): 109-142.
- 김인. (1998).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1(4): 77-94.
- 김영식. (2016). 안전도시를 위한 치안거버넌스 사례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3: 53-76.
- 김용훈. (2023).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구축을 위한-자율방범대 협력방안-영국 자원경찰제도를 참고하여-. 「법학논고」, 80 : 93-125.
- 김지수·주희진·윤태섭. (2023). 지방의회 주민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가정책연구」, 37(3): 131-160.
- 김한규·허용훈. (2023).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조직공정성이 경찰관의 치안거버넌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7(2): 301-327.
- 박여주. (2022). 1인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의 효용성 및 지역 치안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4(6): 1-24.
- 신현기. (2020). 독일 바이에른 주경찰 안전감시원 간의 치안협력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경찰학연구」, 19(3): 135-166.
- 손능수. (2007).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지역경찰의

-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79-106.
- 송건섭·김상길. (200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별 시민평가와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7(4): 233-253.
- 이성식. (2001). 지역주민 방범순찰활동의 참여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험연구. 「형사정책연구」, 9: 125-155.
- 이정호·서덕수·김종빈. (2022). Arnstein 및 Nabatchi 주민참여이론을 통한 아파트형 협동조합주택 연구-사회적 기업 더함의 위스데이 아파트 단지 사례. 「Urban Design」, 110: 39-56.
- 이진아·황의갑. (2009).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전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205-228.
- 임창호. (2001). 자율방범활동의 주민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2013). 자율방범대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8(1): 381-409.
- 한승준. (2007).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95-116.
- 허용훈·문유석. (2007).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93-222.
- 허용훈. (2003). 우리나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연구」, 7(3): 59-82.
- 전대양·한상철(2012). 자율방범대원들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범죄예방활동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경찰학논총」, 7(2): 385-405.
- 전영실. (2005).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시민순찰활동의 운영실태 및 활성화방안. 「형사정책연구」, 71: 1247-1269.

### 3. 외국논문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Nabatchi, T. (2012). Putting the public back in public values research:

Designing participation to identity and respond to valu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5): 699-708.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4. 기타

전북중앙(2024.3.28) 도, 4개지역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앱' 시범운영.

열린뉴스통신(2022.12.20) 부산자치경찰위, 부산형 치안모델 8건 발굴.

연합뉴스(2024.4.16) '순찰 앱'으로 자율방범대 순찰 경로 짚다...전북서 '최초' 시범

조선일보(2024.5.2) "막내가 50대 후반"... 지원자 없어 해체 고민하는 자율방범대

#### 【부록】

### 세종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 설문조사(A)

안녕하십니까? (사)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는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세종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입법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거)에 따라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연구의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자율방범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활동」

※ 연구책임자 : 이승철(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서정욱김동산송건섭(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 문의 : 053-850-6161/6162 [keonsup@hanmail.net](mailto:keonsup@hanmail.net)

#### A. 응답자 특성 관련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대학졸업 ③ 대학원 이상
4.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 )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아들\_\_\_\_명; 딸\_\_\_\_명)
6. 가구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400만원 ③ 400-500만원 ④ 500-600만원 ⑤ 600만원 초과
7.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공공기관 ④ 공무원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언론인 ⑧ 전문직 ⑨ 기타( )
8. 귀하는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고 계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 ③ 아파트 ④ 고급빌라 ⑤ 기타( )
9. 귀하는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십니까? ① 주택가 ② 상가 ③ 유흥가 ④ 공장주변 ⑤ 기타( )
10. 귀하는 세종시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이하 ② 6-10년 ③ 11년-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11. 귀하는 세종시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① 3일 이내 ② 4-5일 ③ 일주일 내내
12. 귀하는 세종시에 주로 참여하는 활동 단체는 무엇입니까?  
① 동호회 ② 시민단체 및 공익단체 ③ 공익단체 ④ 각종 위원회 ⑤ 기타( ) ⑥ 없음
- 12-1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동호회(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13.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자율방범대원 ② 시공무원 ③ 시의원 ④ 관련 전문가(전문위원) ⑤ 시민단체 및 기타( )
- 13-1 (자율방범대원인 경우)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년 \_\_\_\_개월

**B.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 일반 질문**

**1. 귀하께서는 세종시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세종시 안전 또는 치안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도움이 별로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3.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도에 대해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매우낮음 → 매우높음				
3-1	세종시의 전체적인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2	주간 교통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3	야간 교통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4	주간 치안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5	야간 치안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6	청소년 활동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적절한 하루의 자율방범대 참여 시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시간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6시간 이상

**5. 귀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6. 귀하께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매우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다				
6-1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2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6-3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4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6-5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6	경찰·공무원과 관계를 가깝게 지낼 기회 갖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7	경찰의 방범 활동을 돕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8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자발적 참여 ② 주변의 권유로 참여

**7-1. (주변의 권유로 참여하였다면) 누구의 권유로 자율방범활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 ① 가족 ② 주변 자율방범대원 ③ 친구지인 ④ 활동 중인 동호회 ⑤ 경찰  
⑥ 기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8.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합니까?**

- ① 거의 활동 참여 없음 ② 1달에 1번 ③ 2주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1주일에 2-3번 ⑥ 매일

**9. 귀하께서는 이웃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참여를 권하고 싶습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 ② 재난재해 관련 업무(예방대비대응복구 등)  
③ 도로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④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  
⑤ 현행법 체포 및 범죄 신고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⑦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⑧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⑨ 환경정화 관련 업무 지도 ⑩ 기타( )

**C.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방안**

**1. 귀하께서는 세종시의 치안 및 범죄 문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활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위험하지 않다 ② 별로 위험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위험한 편이다  
⑤ 매우 위험하다

**3. 세종시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실태 요건으로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근무 형태, 세종 경찰청과의 협업 등 세종시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매우낮음 → 매우높음				
3-1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축, 인력확보 수준	①	②	③	④	⑤
3-2	자율방범대의 시설구비, 장비구축 정도	①	②	③	④	⑤
3-3	자율방범대의 근무여건, 복지수준 정도	①	②	③	④	⑤
3-4	자율방범대, 세종경찰청과의 협업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경찰청이 2019년 6월 개청되어 행정수도로서 치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치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안수요 대비 경찰인력 부족 ② 지자체, 의회, 경찰청과의 협력 한계  
③ 치안서비스 품질 문제 ④ 주민의 체감 치안 불안  
⑤ 기타( )

**5. 세종지역의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안전 증대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협력 및 참여 강화 ② 자율방범대 처우개선(근무여건, 복지, 초소환경개선)  
③ 지자체, 경찰의 자율방범대 지원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 ⑤ 기타( )

**6.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범죄에 대한 두려움 ②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회의감  
③ 봉사정신의 부족 ④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  
⑤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기타( )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활동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전적 포상 방안 마련 ② 경찰관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③ 공무원 채용시 사회봉사경력으로 인정 ④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  
⑤ 우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⑥ 자율방범대원에 명예경찰증 발급  
⑦ 지역 상품권 증정 ⑧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5. 협력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주민 안전 증대를 위한 기초 간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주요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      ② 민-관-경 치안 거버넌스 구축
- ③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④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
- ⑤ 기타(    )

7.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자유의견

위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귀하께서 세종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방안, 지방자치단체-세종시 경찰청 지원방안, 자율방범대 조직, 인력, 시설 장비, 근무 형태 등 세종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적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세종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 실문조사(B)

안녕하십니까? (사) 대한지방자치학회에서는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세종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입법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거)에 따라 순수하게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연구의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자율방범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치안유지, 범외방, 청소년 선도 등의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활동」

※ 연구책임자 : 이승철(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서정욱·김동신·송건섭(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 문의 : 053-850-6161/6162 [keonsup@hanmail.net](mailto:keonsup@hanmail.net)

#### A. 응답자 특성 관련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졸이하      ② 대학졸업      ③ 대학원 이상
  4.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기타(      )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아들      명; 딸      명)
  6. 가구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300만원 미만      ② 300-400만원      ③ 400-500만원      ④ 500-600만원      ⑤ 600만원 초과
  7.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공공기관      ④ 공무원      ⑤ 자영업      ⑥ 주부      ⑦ 언론인      ⑧ 전문직      ⑨ 기타(      )
  8. 귀하는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고 계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연립다세대      ③ 아파트      ④ 고급빌라      ⑤ 기타(      )
  9. 귀하는 어떤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십니까?      ① 주택가      ② 상가      ③ 유흥가      ④ 공장주변      ⑤ 기타(      )
  10. 귀하는 세종시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5년 이내      ② 6~10년      ③ 11년~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11. 귀하는 세종시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① 3일 이내      ② 4-5일      ③ 일주일 내내
  12. 귀하는 세종시에 주로 참여하는 활동 단체는 무엇입니까?      ① 동호회      ② 시민단체      ③ 공익단체      ④ 각종 위원회      ⑤ 기타(      )      ⑥ 없음
  - 12-1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동호회(명)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13.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자율방범대원      ② 시공무원      ③ 시의원      ④ 관련 전문가(전문위원)      ⑤ 시민단체 및 기타(      )
- 13-1 (자율방범대원이 아닌 경우)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B.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 일반 질문**

1. 귀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치안활동(자율방범대, 치안협의회 등)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전 또는 치안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도움이 별로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3. 귀하가 생각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도에 대해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매우낮음 → 매우높음				
3-1	세종시의 전체적인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2	주간 교통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3	야간 교통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4	주간 치안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5	야간 치안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3-6	청소년 활동의 안전도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여부는 어떠하며, 안전(치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주자, 관심높음 ② 거주자, 관심낮음 ③ 비거주자, 관심높음 ④ 비거주자, 관심낮음

5. 귀하께서는 전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6. 귀하께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하신다고 가정할 때, 아래 참여동기 수준을 말해 주십시오.

	질문	매우그렇지 않음 → 매우 그렇다				
6-1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2	지역 안전에 봉사하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6-3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4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6-5	기존 자율방범대원과의 친분을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6	경찰공무원과 가깝게 지낼 기회를 갖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⑤
6-7	경찰의 방법 활동을 돕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6-8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포상보상금 등)를 얻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께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 ① 자발적 참여 ② 주변의 권유로 참여

7-1. (주변의 권유로 참여하시겠다면) 누구의 권유가 가장 중요하시겠습니까?

- ① 가족 ② 주변 자율방범대원 ③ 친구·지인 ④ 활동 중인 동호회 ⑤ 경찰공무원 ⑥ 기타( )

8. 귀하께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할 것 같습니까?

- ① 거의 활동 참여 안함 ② 1달에 1번 ③ 2주에 1번 ④ 1주일에 1번 ⑤ 1주일에 2-3번 ⑥ 매일

9. 귀하께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이웃(타인)에게도 권하고 싶습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귀하께서 자율방범대원으로 참여하신다면,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예방 ② 재난재해 관련 업무(예방대비대응복구 등)  
 ③ 도로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④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선도  
 ⑤ 현행법 체포 및 범죄 신고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⑦ 미아·기아·출입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⑧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⑨ 환경정화 관련 업무 지도 ⑩ 기타( )

**C.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방안**

1. 귀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 및 범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활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위험하지 않다 ② 별로 위험하지 않다 ③ 보통 ④ 위험한 편이다 ⑤ 매우 위험하다

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및 실태 요건으로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근무 형태, 세종경찰청과의 협업 등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질문	매우낮음 → 매우높음				
3-1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축, 인력확보 수준	①	②	③	④	⑤
3-2	자율방범대의 시설구비, 장비구축 정도	①	②	③	④	⑤
3-3	자율방범대의 근무여건, 복지수준 정도	①	②	③	④	⑤
3-4	자율방범대, 세종경찰청과의 협업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경찰청이 2019년 6월 개청되어 행정수도로써 치안 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가장 큰 치안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치안수요 대비 경찰인력 부족 ② 지자체, 의회, 경찰청과의 협력 한계  
 ③ 치안서비스 품질 문제 ④ 주민의 체감 치안 불안  
 ⑤ 기타( )

5. 세종지역의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안전 증대를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협력 및 참여 강화 ② 자율방범대 처우개선(근무여건, 복지, 초소환경개선)  
 ③ 지자체, 경찰의 자율방범대 지원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 ⑤ 기타( )

6.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활동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범죄에 대한 두려움 ②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회의감  
 ③ 봉사정신의 부족 ④ 동네 주민 간 갈등 및 애착 결여  
 ⑤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기타( )

7.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활동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금전적 포상 방안 마련 ② 경찰관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  
 ③ 공무원 채용시 사회봉사경력으로 인정 ④ 민방위훈련 및 예비군 면제

- ⑤ 우수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      ⑥ 자율방범대원에게 명예경찰증 발급
- ⑦ 지역 상품권 증정                              ⑧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할인 혜택
- ⑨ 기타 (    )

**8.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경찰청은 어떤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의 범죄정보제공                              ② 각종 장비 보급
- ③ 자율방범 교육 및 훈련                              ④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포상
- 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⑥ 기타 (    )

**9.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자치단체), 세종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어떤 형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강화                              ②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보험가입
- ③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포상                              ④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조례 강화
- ⑤ 기타 (    )

**10.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지역주민의 지원은 어떤 형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찬조금 및 기부금      ②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과 격려
- ③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④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참여      ⑤ 기타 (    )

**D.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방안**

**1.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4.27.시행) 로 인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법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법 제14조 제1항의 “경비 등의 지원” 의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향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면 활동 지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유·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② 자율방범거점시설 안정적 확보
- ③ 수당지급 규정마련                              ④ 재해보상 규정 마련                              ⑤ 기타(    )

**3.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범대법(2023.4.17.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 등의 지원” 의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  
 2.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수당  
 3.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현재 청장년층(20~40대)의 자율방범대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원 중 65% 이상이 50대 이상(전국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 귀하께서는 청장년층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②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
- ③ 성과 혹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④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해서
- ⑤ 은퇴자 및 친목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⑥ 기타(    )

**4-2. 귀하께서는 청장년층의 자율방범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보상 혹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활동 참여 인식 전환과 홍보 노력 강화                              ②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
- ③ 경찰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부여 및 강화                              ④ 근무초소 및 장비, 의복 등 근무환경개선
- ⑤ 공공봉사과 직장내의 승진과 연계                              ⑥ 기타(    )

**5.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율방범대 인원 확대    ② 자율방범대(원)의 권한 강화    ③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경제지원강화
- ④ 자율방범대(원)의 열의    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주민관심    ⑥ 경찰과 협조체계 강화 및 기타 (    )

**6.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주민과의 친화력                              ② 지역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③ 경제적·시간적 여유
- ④ 동료와의 협업협동정신                              ⑤ 범죄(예방) 관련 지식                              ⑥ 기타 (    )

**7. 귀하께서는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찰의 지원(세종경찰청)                              ② 지방정부의 지원(세종시청 및 의회)                              ③ 지역주민의 지원
- ④ 중앙정부의 지원                              ⑤ 기타 (    )

**E.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 관련**

**1. 귀하께서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함    ② 거의 불필요함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2. 귀하께서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이 자율방범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전혀 도움 안 됨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약간 도움이 됨    ⑤ 크게 도움이 될 것임

**3. 귀하께서는 자율방범대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① 안전장비 사용 방법    ② 자율방범대 관련 법과 규정    ③ 긴급상황발생시 대처요령
- ④ 호신술    ⑤ 범죄예방 관련 지식    ⑥ 대화법    ⑦ 기타 (    )

**4.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의회, 세종경찰청, 자율방범대(혹은 민간단체) 간 치안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 문 5로 가시오

→ 문 6으로 가시오

5. 협력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주민 안전 증대를 위한 기초 간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주요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강화      ② 민·관·경 치안 거버넌스 구축
- ③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                      ④ 맞춤형 치안 수요 발굴
- ⑤ 기타(    )

7.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자유의견

위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 귀하께서 세종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방안, 세종시청·의회·세종경찰청 지원, 자율방범대(조직·인력·시설·장비·근무 형태) 활성화 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면, 연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협력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유(FGI 분석)

- 경제적 지원이 너무 약해서
- 충분한 보상 및 경제적 지원이 너무 약함
- 방법대원 연령대가 높아 활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연령이 낮아져야 실질적인 방법활동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갑을 관계
- 활동비 지원 강화
- 경제지원 부족
- 경제적 시간적 이유
- 지원부족, 방법활동지원 강화
- 돈
- 청년층 취직, 가산점 부여 등
- 별로 협력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음
- 가시성 행사
- 봉사에 대한 대가
- 평상시 교류 적음
-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못함
- 상위기관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뀜
- 경찰 관계자들이 자주 바뀜, 친분이 쌓일만한 시간이 없음
- 각 기관 간 유대관계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
- 활동비 지원금 강화
- 재정관련 문제, 책임 권한 구분
- 서비스 정신 부족
- 참여부족
- 만남이 없음
- 홍보 시 언급이 안 되어 있음
- 소통부족
- 예산과 인력, 장비가 선행되어야 추진 가능
- 구심점이 없는 칸막이 행정과 이해관계 격차 존재
- 각자 기관의 일만 하기 때문
- 예산부족, 인력부족
- 자율방범대 자체가 실효성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의견(FGI 분석)

- 충분한 인력 확충, 재원 조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보조금 지원
- 교육
- 경제적 지원 및 경찰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 부여 및 강화
- 자율방범대에 경제적 지원 강화
- 충분한 보상과 경제적 지원 강화
-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업과 함께할 때 어느정도의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진다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음, 방범대 가입 조건을 강화해 대원의 자긍심 고취
- 젊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보조금 부족
- 방범대원들에게 격려와 찬사
- 많은 지원 필요
- 보조금 확대
- 지원확대
- 시장과 의장의 참여로 홍보효과와 더불어 모범을 보이는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수당지급
- 활동비 제공
- 복장개선
- 순찰차 노후로 인하여 안전에 취약
- 약간의 보조금
- 정보 공유 및 소통(방범대, 지구대, 동사무소)
- 복장 등 사비로 구입, 소방대에 비해 수당지급이 전혀 없어 상대적 박탈감 생김
- 참여수당 지원
- 시설장비
- 자율적인 참여, 탈퇴가 쉬운 순수봉사단체로서의 위상 확립, 경찰청 등 공공부문의 지나친 연계 지양, 인센티브, 포상, 금전적 지원 등은 철저하게 비례하여 지원, 독립성, 경찰조직과 다른 대원 중심의 조직과 의사결정체 구축
- 자율적 참여가 되어야 함
- 불필요한 규제
- 설명회 필요, 상위기관의 적절한 홍보로 지역주민의 설명회 필요
- 수시로 장비 교체 희망
- 자율방범대원 권한 강화 필요
- 방범대원 의견수렴 및 자유토론 및 방안 모색
- 홈페이지 활용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경험 공유

-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실무 간사 필요, 노후 된 차량 수리
- 각종 장비 보급
- 지원금 확대
- 방범대와 지구대 간 정보 공유
- 복장지원
- 자율방범대가 모일 수 있는 초소 확보, 노후 차량 지원 필요, 방범대 야간 근무 지도 및 감독을 위한 경찰 인력 필요(퇴직 경찰 중)
- 연합대와 지대 간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며, 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정부 예산 지원 법령 명시 필요(초소, 차량, 의류 등 경찰청에서 지원), 자율방범대원 권한 강화(반려견, 금연구역, 단속권, 교통 수신호, 청소년 지도권 법률로 명시, 교육 강화)
- 형식적 순찰에서 탈피하여 세종경찰청과 협업하여 실질적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 극대화, 청소년 탈선예방 필요
- 단체 간 신속한 소통 채널 구축(문자, 카카오톡, SNS 등)
- 강력범죄에 강력대응
- 경찰청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민 수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 수요조사 플랫폼 활성화 필요
- 시민 대다수가 자율방범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체계 구축이 필요함, 경비지원으로 자율방범대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같음
- 민간 단체와 협력에 쓸 예산으로 사이버 범죄탐, 경찰 지원이 필요